

입법평가 연구 09-16-□□

#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전 훈

#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Netherland

연구자 : 전 훈(경북대학교 교수)  
Jeon, Hoon

2009. 7. 31.

## 국문 요약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나 규제당국의 규제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정확한 인식과 판별은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개혁의 순위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전략의 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GDP의 3.6%에 해당하는 행정부담의 감축(25%)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입법이나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정보제공의무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담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비용들이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되고 나면 문제가 되는 행정비용을 계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량화(定量化)작업은 통일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모델의 운용은 규제에 의한 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부담의 측정을 통해 규제개혁정책의 목표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여 가시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고, 유럽연합에서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을 유럽차원의 공통적 행정비용측정 모델로 권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지만 이를 측정하거나 계량하는 방법이 없었고 또한 필요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행정부담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한 행정부담의 정확한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시도된 표준비용 모델의 접근은 이러한 행정부담의 측정과 부담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부담 측정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의 측정, 행정부담의 감축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준비용의 산정은 규제의 중심에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는 자료제공과 자료요청에 드는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활동의 비용(P)과 자료요청의 연 횟수(Q)를 종합( $\sum P \times Q$ )하여 구체화된다. 행정활동 비용은 변수인 비용 요소와 시간 요소를 곱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P = \text{비용} \times \text{시간}$ ). 기업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달된 자료요청의 횟수는 규제 앞에 놓인 기업의 수와 기업이 자료요청을 받는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Q = \text{기업의 수} \times \text{빈도}$ ).

표준비용의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의무의 규제의 원인에 따른 3가지 유형별 식별과 관련 가변요소에 대한 분석이며, 기업의 시간소비와 비용분석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정상효율기업을 선정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등록 장부에 입력하는 계산(측정)과 보고과정의 단계에 따라 작성된다.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연구는 법률이나 국내·국제법상의 규제를 통해 부과되는 행정부담의 산정을 비교적 간이하면서도 일관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행정부담의 측정이 목표로 하는 부담의 감축과 탈규제의 효과가 개선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 키워드 : 정보제공의무, 표준비용모델, 정부(공동체)규제, 행정부담 감축, 행정부담 측정

## Abstract

The “Stand Cost Model(SCM)” has been developed to provide a simplified, consistent method for estimating the administrative cos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obligations imposed on business by centr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

SCM is developed because companies in the Netherlands complained about administrative burdens. But Government did not have a tool to identify the burdens and to calculate how big they are. So SCM is developed because the Dutch government wanted to deal with a problem that companies notified and because we wanted to be able to analyse the problem properly

In the Netherlands in 2003, an inventory was made with the SCM to measure the total extent of these burdens for the business community. This inventory forms the starting point for the operation of the Dutch Cabinet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with 25% in 2007.

The estimated total of all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Netherlands as of 31 December 2002 comes to a total of € 16.4 billion, the equivalent of 3.6% of the Dutch GDP.

In 2005,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administrative costs imposed by EU legislation and the dutch SCM was recommended. The dutch SCM is today the most widely applied methodology for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Administrative burdens are the costs that the corporated sector must make in order to comply with information obligations as the result of “Government imposed regulation”.

The process of reducing the administrative costs with the SCM method can be divided in three steps: Break down regulation into manageable components that can be measured; “Measuring the administrative burdens”; “Simplifying or Reducing the regulation”.

The SCM estimates the costs of completing each activity on the basis of a couple of basic cost parameters: Price, Time, Quantity.

$$\Sigma P \times Q = \text{Price}(\text{P}_{\text{internal}} + \text{P}_{\text{external}}) \times \text{Time} \times \text{Quantity}(\text{population} \times \text{frequency}).$$

When all ministries found out that they had to apply SCM, there was some opposition. But not much too. Because the government had set a 25% reduction target, everybody understood that quantification was necessary. In the case of new legislation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new costs for companies was already obligatory. Now they had a method, that is quite easy to apply. And we can appreciate that, as long as there is a clear political momentum, that opposition is easy to overcome.

From what we have seen of Dutch progress, we can conclude that their approach should lead to the quality of government through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 Key Words : Information Obligation, Standard Cost Model(SCM), State(EC) Regulati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Measuring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 2 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13
제 1 절 의 의 .....	13
제 2 절 도입배경 .....	14
I. 네덜란드의 선진규제 agenda의 발전 .....	14
II.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전후로 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 .....	17
제 3 절 추진과정 .....	20
I. 행정부담의 측정 .....	21
II. 행정부담 감축목표의 설정 .....	23
III. 지원체계의 구축 .....	29
IV.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인식 .....	33
V. 표준비용모델의 개선 .....	36
제 3 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	39
제 1 절 목적과 범위 .....	39
I. 행정부담의 양적측정의 목적 .....	39

II. 감축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	40
III. 기업이 제공하는 의무의 유형 .....	52
제 2 절 핵심산식의 구성 .....	56
I. 행정활동비용(P) .....	57
II. 자료요구의 연간 요청 횟수(Q) .....	59
제 3 절 세부단계의 기술 .....	60
I.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	60
II. 조사를 위한 시작항목 .....	62
III. 보고서작성을 위한 출발사항 .....	66
제 4 절 표준비용의 산정 .....	68
제 4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9
참 고 문 헌 .....	73

**【부 록】**

표준비용모델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	77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기대효과는 가시적이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 네덜란드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양질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환경의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이를 더 정확히 식별한다면, 규제개혁을 위한 우선순위로 요구되는 행정부담의 구별화가 유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어 이제는 유럽연합 차원으로 적용되는 행정부담 측정방법인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예상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아직 단언할 상황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구체적 실증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시사점의 발견은 가능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행되고 유럽차원으로 확대된 기업의 행정부담의 추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비용모델의 도출을 위한 업무의 기본에 관한 내용을 소개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표준비용분석 모델의 발견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연구되고 시행되었던 기업의 행정부담의 산정과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에서 대상으로 하는 목표와 범위, 비용 산정(계량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본 공식과 기법상의 특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문헌자료(네덜란드 SCM 매뉴얼 프랑스판, OECD와 EU의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의 규제개혁 연례보고서), 관련 국내 연구 논문에 기초한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규제청과 SCM 국제 네트워크<sup>1)</sup>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영문PDF)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규제개혁과 SCM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규제개혁과(Regulatory Burden Department)의 SCM 담당 책임자와의 E-Mail 교류를 통해 네덜란드 SCM에 관한 최근 현황과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sup>2)</sup>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아래와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3장.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특징) 본격적인 내용 검토에 앞서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과정의 배경에 대해 선행검토(제2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연구와의 접목가능성(제4장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행정부담에 관한 의문과 행정부담의 양적 측정(계산)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부담의 총량을 계산하는 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1)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2) 규제개혁팀(Regulatory Reform Group), Ms. Eva Buitenkamp(e.l.buitenkamp@rr.nl)에게 감사를 표한다.

둘째,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기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 실행과정에서 도입되는 출발 포인트와 기존의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모델의 구성과 기능 및 시작 포인트에 대해 정의하기로 한다.

셋째, 표준비용모델 운용과정에서 중요한 현행 법률이나 규제상의 행정비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존하는 행정부담 전체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신규 및 개정(변경)된 규제의 산정과 가변요소의 추가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규제화작용의 최적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규제의 원인(regulatory origin)을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그 규제를 유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제 2 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 제 1 절 의 의

각국 정부는 모순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에 대한 강력한 고려비용을 검토하고, 인·허가시스템을 단순화하며, 허가(증)의 수를 현저하게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입법자나 규제당국, 규제의 대상인 기업은 대부분 해당 규제가 요구하는 행정부담의 규모는 물론 무엇이 행정부담에 해당하는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행정부담의 측정과 계산은 규제입법의 사전단계에서 이른바 입법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EU 주요국의 행정부담/GDP 비율은 약 1.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우리의 경우도 GDP 대비 약 3%의 행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기법인 표준비용모델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걸쳐 정부 부처나 국가의 규제로부터 나오는 행정비용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표준비용모델은 국내 차원에서 각 법률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비용보고서 작성 항목에서 상세한 세부 사항과 데이터베이스가 동원되고, 이를 통해 비용과 효과의 경감을 위한 정확한 양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동 기법은 법률과 규제의 대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의 행정비용의 증가에 대한 (법률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3) 네덜란드는 GDP 대비 2.9~3.7%, 가장 낮은 영국은 1.2~1.5%, 반대로 헝가리, 그리스의 경우 5.4~6.8%의 높은 행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 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각국에서의 규제체계와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실례를 인정하는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제 2 절 도입배경

### I. 네덜란드의 선진규제 agenda의 발전

네덜란드는 선진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독특한 정책 분야에서의 개척자로 평가된다. 네덜란드의 규제 정책은 행정체계와 법률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폭넓은 보고서를 발표한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새로운 규제의 개발과 영향평가(과정) 도입의 과정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 다음의 중요한 이정표가 1994년의 MDW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의 기능 강화, 법률의 중요성,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의 Better Regulation 정책의 핵심으로서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1998년의 Slechte Committee은 행정적 부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들에 중점을 둔 일련의 행위들을 설정한 오늘날 접근방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들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이 정책들은 2001년부터 검사와 집행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내부의 규제 부담과 시민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legal quality framework와 EU 수준에서 Better Regulation의 발전에 대해 EU 조직들과의 연계를 증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Better regulation은 강력한 정책 분야로서 등장하게 되

었다. 네덜란드의 규제개혁과 그 방법의 발전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통해 개괄해보기로 한다.

[네덜란드 선진규제정책의 발전단계]4)

1984	Geelhoed Commission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의 기업가적 요소들이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중요한 규제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상의 조문들(규제의 발전을 위한 규칙들)은 기술적인 법률안(law-drafting)과 거의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법적 조건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1985	Grapperhaus Commission은 순응비용(compliance costs)과 제안들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사원(Council of State)은 제도적인 법/정책 결정 관계와 행정부 내부의 조정, 법률안 제정 전문가의 모집과 발전을 포함하는 규제 특성 이슈들을 판단하였다.
1987	Commission on Assessing New Legislative Projects(CTW)
1991-92	새로운 규제개발의 지표가 되는 quality framework를 설정. 법률을 개정.
1993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1985년에 최고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포함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포함하는 규제과정의 재검토를 종결한다.
1994	MDW의 시행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공식적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시장의 작동, 규제완화, 법률 특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들 중 하나는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엇이 엄격히 필요한가”로 되돌아가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은 또한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의 정비를 가져왔다. Van Lunteren Commission은 SMEs와 신규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였다.
1998-99	새로운 연립내각 협정(coalition agreement)에서 MDW2를 설립한다. Slechte Committee는 기업에 대한 행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60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순응비용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채택함과 더불어 그 프로그램의 기업적 초점을 확인시켰다.

4) OECD&EC, Better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2009, p.32(table 2).

제 2 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2001	검사와 집행을 위한 첫 번째 공식 개혁 프로그램(Framework Vision)의 출범
2003	공공부문 개혁(Andere Overheid-A Different Government)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시행.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주요한 행위로 구성된다: 중앙정부는 스스로 더 개선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이 내용에서 첫 번째 시민의 행정적 부담 감소 프로그램의 시행과 지방 수준에서 행정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계획의 발전이 포함된다
2003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 경감 프로그램의 시행
2004	네덜란드의 EU의장(Presidency)국: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강조하는 EU agenda상에 Better Regulation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높은 단계의 정치적 우선순위. “simple is better”와 같은 여러 발의(initiative)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그 발의에는 “EU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경제적 성장을 촉진”이라는 EcoFin 보고서와 EU의 행정적 단순화 프로그램을 위한 330개의 단순화 제안의 조정을 포함한다. EU의 다른 의장들과의 조정에서 네덜란드는 4개의 의장국(후에 6개국으로 확대)과 우선순위와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Better Regulation Agenda의 장기 계획을 촉진하였다.
2005	허가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검사와 집행을 위한 두 번째 Framework Vision의 시행
2007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위한 개선되고 확대된 계획의 수립, 시민, 전문가, 정부내부의 부담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 검사와 집행을 위한 Framework Vision의 개선, 지방 수준에서 행정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들의 개선.

## II.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전후로 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

### 1. MDW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정부는 1994년에 시장(market), 규제완화(deregulation), 입법의 질(legislative quality)의 더 나은 기능을 위한 MDW(Marktwerving, Deregulering en Wetgevingskwaliteit)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MDW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규제간소화를 위한 행정 부담의 축소에 있었다. 1993년도에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의 총 비용은 GDP의 2% 이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연립내각의 합의와 슬레트위원회 설치

다음 단계로 행정부담을 10%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 1998년 Slechte 위원회설치에 관한 연립내각 협정(Coalition agreement<sup>5)</sup>)이 이루어졌다. 연립내각합의서(coalition agreement)에서, 네덜란드 내각은 행정비용을 25%까지 줄이기 위한 의향을 표명했다. 행정비용의 감소는 민간 부분이 정부와 제3자에게 정보를 갖추는데 보다 적은 시간과 돈의 소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지출의 삭감이나 제3자의 아웃소싱활동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자는 생산은 동일하나, 비용은 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성을 강화시킬 것이다.<sup>6)</sup> 그리고 1998년에 네덜란드 의회

---

5) In multiparty democracies, a coali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form the cabinet. It codifies the most important goals and objectives of the cabinet. It is often written by the leaders of the parliamentary parties.

6) Memorandum of the Dutch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CPB),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7 April 2004.

는 1998년 연립내각 협정의 목표로 정한 15% 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의안(motion)을 통과시켰다. 당시 내각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기업에의 행정부담 축소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on Enterprises)-위원장 이름을 딴 Slechte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SME)<sup>7)</sup> 대표, 대기업, 정부 산하기관, 회계법인, 정당, 유럽의회, 그리고 공공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장관은 선도 그룹(steering group)을 통하여 관계했다.

### 3. 1999년 Slechte 위원회의 보고서

위원회는 다른 대상그룹(target groups)을 제외하고 기업에게 부과된 비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세 가지 형태로 구별되었다(기업의 순운비용, 공공기관에 의한 법률 시행 비용, 기업들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급하여야만 하는 정보제공비용).

한편 위원회는 이중 세 번째 유형이 축소를 위한 유일한 중점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부담의 형태를 줄이기 위한 60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기관에게 기업에 의해 이미 제공된 정보의 재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ICT<sup>8)</sup> 메커니즘의 사용이다.

위원회는 또한 행정 부담의 조직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측정을 제안했다. 위원회 제안의 대부분은 내각과 의회에 의해 수용되었다. 부담 축소의 문제를 정치화 하지 않는 관점으로, 개별 규제 목적의 논의되지 않으면서, 편익과 비용의 균형도 논의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좁은 초점은 그 후에도 유지되었다. 규제의 필요성을 유지하면

---

7)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8)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서, 초점은 행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공익(general interest)” 문제에 있었다. 달리 말해 ‘보다 적은 규제(less regulation)’가 아니라 ‘보다 현명한 규제(smarter regulation)’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내각은 위원회에 근거한 정부의 업무지원을 위한 행정부담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s : ACTAL)를 설립하였다. 2003년 네덜란드 총선 이전에 이미 행정부담이 1994년과 비교하여 7% 정도 줄었다고 평가되었다. 새로운 입법에 따른 부담이 제도적으로 이 단계에서 아직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대략적인 감소이다. 순 감소(net reduction)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제에서 새로운 부담의 출현 때문에 더 작아질 것이다.

#### 4. 2003년 7월 이후 - SCM의 공고화(consolidation)

네덜란드 SCM프로그램은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고, SCM에서 접근하는 행정부담은 “정부가 부과하는 법률과 규제의 결과인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업무 비용”으로 정의된다.

네덜란드 SCM이 보여준 특징은 개선될 수 있으며 평가될 수 있는 부담의 기준수치(baseline measurement)의 확립, 측정되고 계량화된 축소 목표, 예산주기의 고리(a link to the budget cycle), 중앙감시체제로 구축되는 강력한 지원과 같은 제도적 구조와 독립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ACTAL에 의해 나타난 자문을 들 수 있다.

독립자문위원회인 ACTAL은 네덜란드 선진규제와 이를 위한 SCM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sup>9)</sup> 2000년에 설치된 이후, ACTAL은 네덜란드에서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고 구조화하는데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기구는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기능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Better Regulation의 여러 부분(기업 및 시민부담 감소 프로그램, 새로운 규제의 부담과 관련된 정보

9) OECD&EC, Better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2009, p.26

를 내각에 조언하는 역할, EU수준에서 Better Regulation에 관한 홍보)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적인 자문단체인 행정부담자문위원회(ACTAL)는 관료주의 감소문제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조언하는 활동을 한다. 행정부담자문위원회(ACTAL)는 감시자와 촉진자(facilitator)로서 활동하며, 2011년까지 비즈니스와 시민들에 대해 행정부담을 25% 감소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에 전반에 걸쳐 강력한 후원(backing)을 제공한다.

### 제 3 절 추진과정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 산출을 위한 계량화 모델은 네덜란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계량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법 혹은 유럽(공동체)법의 적용에 관한 각종 보고의무나 신고의무를 요구하는데서 오는 비용과 시간소요의 위험성과 그 비용측정의 필요성은 규제개혁의 요청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부록에서 소개하는 네덜란드 표준비용모델 매뉴얼은<sup>10)</sup> 1990년대 이래로 행정부담에 관한 문제를 연구해온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공동연구진에 의해 작성되어 2003년에 발표되었는데, 선진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연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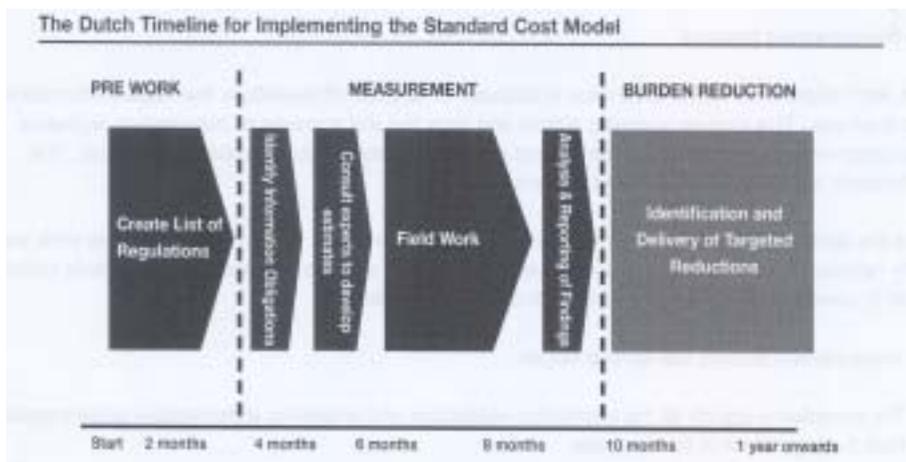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을 가장 먼저 추진하였던 네덜란드 SCM의 경우 2007년을 목표로 한 2003년 12월에 나온 1차 SCM 모델(부록부분)과 2008년-2011년 목표모델의 경우(SCM II) 기

---

10) 부록 부분의 표준비용모델 지침서(부제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지침)는 2003년 12월에 발표되었다. 본서의 경우 2004년 8월에 간행된 프랑스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지침서의 집필 책임은 네덜란드 재무부의 Daniël Charité, 덴마크 기업통상청의 Peter Bay Kirkegaard, 스웨덴 산업, 고용 및 공보부의 Gunilla Svensson, 노르웨이 통상부의 Jostein Greve가 맡았다.

준모델에서 개선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도된 표준비용 모델의 접근은 이러한 행정부담의 측정과 부담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행정부담 측정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에 접근하는 방식은 행정부담의 측정, 행정부담의 감축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sup>11)</sup>

### [SCM의 실행을 위한 일정표]<sup>12)</sup>



## I. 행정부담의 측정

2002년 12월 31일 현재 네덜란드의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이행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경우 연간 164억 유로에 해당하였다. 이는 네덜란드 GDP의 3.6%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43억 2천€)-보건부(32억€)-사회부(25억 3천만€)-법무부(25억 1

11) 김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5. pp.63-65(영문 자료는 영국 규제개혁팀 총리보고서. pp.18-19 부분 참조)

12)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op.cit., p.22.

천만€)등의 순서이며 이들 부처가 총 행정부담의 1/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법률별(조세관련 법률은 규제 법률에서 제외되었으나 행정부담 측정에는 포함 됨)로 보면 10개 법률에서 전체 행정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50여개의 정보제공의무에 의해 행정부담의 대부분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10개 분야의 행정부담이 많은 이유는 대상 기업의 수가 많고, 정보제공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가 정보제공을 받는 방법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만, 행정부담이 높다는 것을 과다하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정보제공의무가 반드시 마이너스적 효과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므로 정보제공에 드는 프로세스와 부담을 감경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부담이 많은 주요 10개 법률]<sup>13)</sup>

---

13) 이종한 연구위원의 자료(SCM Networks: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에 게시된 자료)와 후술하는 네덜란드 SCM보고서의 번역자료(원본자료 p.33)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법 안	부 처	행정부담 (×10억 €)	정보제공의무
회계법	법무부	1.5	연간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부가가치세법	재무부	1.4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출
상품법	보건부	1.2	수량과 안전규제
환경법	환경부	1.0	환경상 허가, 보고에 관한 정보 제공
급여세법	재무부	0.7	월급관리와 급여세 지불확보
건강보험법	환경부	0.7	근로자의 의료비지출관련 사항의 보고
사회보장법	사회부	0.6	급여관리와 근로자 보장 및 지불
소득세법	재무부	0.6	소득세자료제출
가격법	경제부	0.5	상품에 대한 의무적 가격
근로조건법	사회부	0.5	근로조건상 위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의 제공
합 계		8.7	

## II. 행정부담 감축목표의 설정

네덜란드 정부는 전체 정부의 규제상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감축목표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년 동안 전체 행정부담의 2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부담의 감축목표의 달성을 장려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운영할 지원조직과 아울러 각 부처와 규제당국의 프로그램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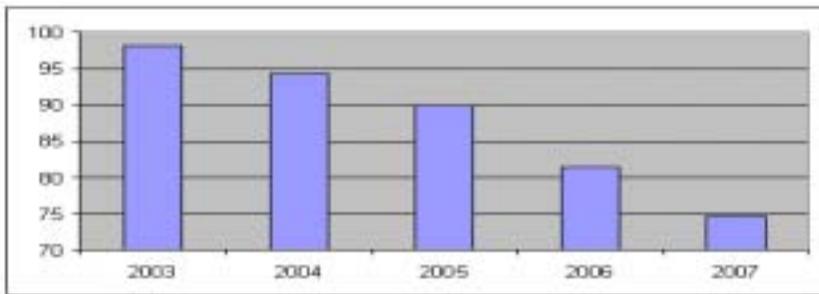
### 1. 감축목표

행정부담을 감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sup>14)</sup>

14)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1. 현행 정책목표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2. 규제의 간소화
3. 정부와 규제당국이 1회만 정보요청을 하도록 자료공유와 자료관리기법의 개선
4. 규제순응적 기업의 지원과 친(親)이용자 요청에 따른 시간절약

정보제공 비용의 베이스라인 측정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모든 부서는 그들의 부서 내에 법률과 규제로부터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의 목록을 수집하게 된다. 규제관련 모든 부서는 업계와 협력하여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개별적 부서와 관련되는 기업을 위한 행정부담 감소의 방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문부처로부터 합동자문(joint advice)을 구하게 된다. 아래 표15)는 2003년부터 2007년간의 부담의 감소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기업의 행정부담의 인식(perception)의 모니터링

2008년 이후 네덜란드 정부(내각)는 부처별 감소 프로그램을 작업해 왔는데, 이것은 규제 부담을 훨씬 줄이게 될 것이다. 2008년 11월 규제개혁팀(Regulatory Reform Group)보고서에 의하면 현 내각에서 이러

Outcomes, Cabinet Office Publication&Publicity, London, March 2005, p.26  
 15)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default.asp?page=95>(검색일자: 2009년 7월 20일)

한 부담의 감소 목표를 충족할 때, 이것은 기업의 관리부담의 25%를 감소시키기 위한 내각의 목표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 부담의 감소를 위해 투명성과 목표치의 모니터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다음 3가지 테마 범위에서 분류되어 진다.

- 1. Less (the reductions) : 보다 덜한 (감소)
- 2. Easier (better service) : 보다 쉬운(더 좋은 서비스)
- 3. Noticeable (the total reduction) : 주목할 만한 총감경

이 가운데 보다 적은 규제부담의 테마의 경우 2008년 9월 30일 이미 8%의 감축이라는 목표도달이 모니터링 되었다. 향후 요청되는 측정은 2011년 까지 25% 감소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측정이 확인된다.

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분야에서의 측정은 행정부담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이들 비용의 25% 가까이를 차지하는 감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 3. 2011년 목표를 위한 접근방식

#### (1) 보다 적게(Less)

##### ① 업무에 있어 25% 미만의 행정 부담

개별 부처의 축소계획상 2011년까지 행정부담의 25% 순축소(net reduction)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점은 2007년에 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의 zero base 수치에서 측정한 2007년 3월 1일의 행정부담이 된다. 제로베이스 수치의 결과는 2008년 5월의 진행 보고서에서 의회에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은 또한 (축소에 있어 자신의 부분을 행하는 것에 동의한) 정부의 지역 단계까지 펼쳐지고, 조사와 시행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있다. 그것은 *lex silencio*(침묵은 동의다)원칙에 근거하면서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더 나은 법안(*initiatives*)을 포함한다.

② 더 낮은 순응비용(*compliance cost*)

2008년 5월 진행 보고는 업무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은 승낙 비용을 찾은 30개 분야를 제시했다. 7개의 시범업무(*pilot project*)는 그 후 완료되었고, 그것들은 이용된 수치(*measurement*) 방법이 유효하고 실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른 23개 분야에서 업무에 의해 나타난 문제의 실제 수치는 2009년 2월 말에 완료되었다.

구체적 축소 제안은 2009년 상반기 계획될 것이다(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이 제안은 차후 수행보고서상의 우선적 분야에서 순응비용의 축소 정도(퍼센티지)에 대한 기초를 이룰 것이다.

③ 더 낮은 감독비용

감독비용이 측정된 19개 분야에서, 25% 축소는 이러한 분야에서 SME<sup>16)</sup> 기업들이 많아야 연간 두 번의 조사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달성될 것이다. 이것은 행정 부담에서 25%의 축소에 이어 2500만 유로의 감축을 의미한다. 업무의 관점에서 확실히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검사관들에 의한 업무의 질적 개선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④ 보조금과 관련한 더 낮은 비용

보조금 구조는 어느 쪽이 전국적 정부 보조금을 간소화할 것인지

---

16) small- and medium -sized (SME)

그리고 운영과 이행 비용이 낮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인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업무를 위한 모든 보조금 계획은 현재 내각의 임기동안 이러한 구조에 근거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보다 간소하게(Simpler)

### ① 더 투명한

업무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최신의 그리고 명료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내각은 [Antwoordvoorbedrijven.nl](http://Antwoordvoorbedrijven.nl)<sup>17)</sup>의 도움으로 이것을 달성하기를 원한다. 현재 방문자 수(연간 960,000명)는 2011년에 150만 명 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때까지, 62개의 “regulatory navigator”가 기능할 것이다. 보고서(2009, OECD & European Commission) 작성 당시에는 32개이다.

### ② 더 예측가능한

더 나은 예측가능에 의해, 내각은 입법에서 어떤 변화가 단지 1년에 2일 발효될 것과 이러한 변화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미리 공표될 것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 목적은 모든 장관들이 2011년까지 공통 개시 날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 ③ 더 빠른

더 빠른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lex silencio* 원칙의 광범위한 적용에 의하여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2007년에, *lex silencio* 원칙이 적용한 21개의 허가 제도가 있었다. 2011년까지 내각은 *lex silencio* 원칙이 적용하는 허가 제도의 이러한 2007년 수치가 두 배가 되기를 원

---

17) 웹 사이트 주소(<http://antwoordvoorbedrijven.nl/>)

한다.

④ 더 나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인식된 규제 부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 부담의 zero base 수치(measurement)라 붙여진 상위 10개 이행 조직은 2011년까지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직은 법률과 규정을 구체적 정책 규칙 또는 형태와 절차로 전환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식된 행정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업무와 관련한 직접 접촉이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접촉은 정보제공의무에 성가심이나 만족을 준다.

(3) 느낄 수 있게(Tangible)

모든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규제 부담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초기 내각은 어느 정도의 기업이 규제부담에 의해 불편한가를 측정할 것이다. 기술한 Perception monitor와 관련해 규제부담에 관한 일정한 지적(불만)사항은 기업에 제시된다. 많은 이러한 지적(불만)사항은 이전에 언급된 프로그램의 우선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각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기업 발전의 인식을 원한다. 내각은 또한 Perception monitor의 내용을 도표화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행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10점에서 7점을 받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다.

측	면	목	표(2011년)
---	---	---	----------

보다 적은	행정 부담	순 -25%
	승낙 비용	30개 최우선 분야에 대한 외부 비용의 비율, 측정 후 결정되기 위한. 2009년 봄의 진행 보고에서의 결과

	국가 정부에 의한 조사 때문에 19개 영역에 대한 감독 부담	-25%
	보조금	업무에 대한 국가 정부 보조금의 100%는 낮은 운영과 이행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더 간단한	더 예측가능한	개시일자는 모든 장관들에게 영향을 준다.
	더 명백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twoordvoorbedrijven.nl: 연간 1500만 방문자</li> <li>▪ 62개 산업에 대한 규정 navigators</li> </ul>
	더 빠른	2007년과 비교하여 Lec Silencio 원칙이 작용된 허가 제도의 수를 두 배로 하기
	더 나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에 대한 기존 제도는 200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한다</li> <li>▪ 상위 10개의 집행기구에 대한 동일</li> </ul>

명백한	예 측	15% 이상의 기업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는 입법과 규칙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보제공의무	25% 이상의 기업은 그들이 불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매우 적게 방해를 받는다고 말한다
	감독	15% 이상의 기업은 그들이 감독기구의 엄격한 요구로부터 매우 적게 방해를 받는다고 말한다
	규정에 따르기 위한 더 낮은 비용	25% 이상의 기업은 그들이 규칙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부터 매우 적게 방해를 받는다고 말한다

### III. 지원체계의 구축

#### 1. ACTAL(2000)

ACTAL(Adviescollege Toetsing Administratieve Lasten)는 독립적 성격의 행정부담과 규제개혁을 위한 자문적 평가기관(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s)이며 2000년<sup>18)</sup>에 3년간 활동하도록 설치되었다.

이후 두 차례 갱신되었으며, 현재 2011년까지 연장되어있다.

### (1) 조직과 활동

ACTAL이 조직은 3명의 위원과 12명의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 업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제안을 효과를 정부에 조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조직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다른 선진규제/규제개혁(Better Regulation) 정책을 포괄하게 되었다. 현재는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민 프로그램까지 다루고 있다.

2011년까지 잔여기간 동안 규제효과에 관하여 정부부처 내에서 문화 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ACTAL의 연간 업무프로그램은 재무부, 내무부에 의해 승인된다.

### (2) 정부와 의회에 대한 자문

ACTAL의 현재 과업은 정부와 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 ① 제안된 규제의 결과로서 업계와 시민의 행정부담
- ② 현재 규제의 결과로서 업계와 시민의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평가
- ③ 규제부담의 대상에 관한 전략적 이슈들, 정책과 규제를 준비함에 있어 통합적 평가 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조언
- ④ 문서화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과 지방정부의 규제부담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 (3) 규제입법의 감시자

네덜란드 각 부처의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법안에서 요구하는 행정부담이 계산되어 송부되는데 ACTAL은 독립적 행정기

---

18) 2009년 OECD와 European Comission보고서 부록2에는 2001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SCM 네트워크나 다른 자료에서는 2000년으로 소개되어 있다.

구로서 규제관련 법률안들이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나 의회로 이송되기 전에 부처로부터 온 행정부담의 산출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담 감경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네덜란드 각료이사회는 새로운 법안의 표결함에 앞서 ACTAL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부처 가운데 재무부는 행정부담 경감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지며, 매 6개월 마다 진행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독립기관인 행정부담자문위원회(ACTAL)은 관료주의 감소와 규제개혁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여전히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ACTAL은 감시자와 촉진자로서 활동하며, 2011년이 지나서까지 기업과 시민들에 대해 행정상의 부담을 25% 감소하기 위해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 정부에 강력한 후원을 제공한다.

## 2. 규제개선그룹(RRG) (2007)

네덜란드에서는 내각부처 소관 법률에서 기인하는 행정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에 걸쳐 관료주의적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부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관료주의를 감소하는데 관점이 맞춰져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정과 경제에 관한 업무에 대해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기업가에 대한 행정부담 프로그램을 이행할 규제개선그룹(Regulatory Reform Group)과 같이 독자적으로 결합된 부서가 IPAL(행정부담을 위한 부처간 조직)의 후신으로 2007년에 설치되었다.

### (1) IPAL에서 RRG로

기업계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IPAL은 초기 경제부 소속이었으나, 2003년 선거후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정부 내 IPAL의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적어도 예산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IPAL은 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하였으며 2007년 정부는 IPAL과 경제부 산하 3개 프로젝트 부처와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두 부처에 동시에 보고하는 단일의 기구인 RRG로 재편되었다.

RRG는 재정과 경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총리가 수행하던 기업에 대해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경제부와 재정부의 결합조직(joint organisation)인 규제개선팀은 불필요한 규제상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주된 목표(target)로 하고 문제해결 방식을 넓혀 기업들에게 확실한 행정부담의 감경 결과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2) RRG의 조직구성

RRG는 재무부(재정)와 경제부(인력)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어지고, 주 사무국(차관)에게 보고한다. RRG는 형식상 장관급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40명의 스태프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두 부처(재무부와 경제부) 출신이다.

RRG의 구성은 대략 10개 분야로 이루어진 팀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규모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다 : 대상 평가, 계획과 감독, ICT, 국제협력, 도시, 업계와의 상호작용, 장관협의회 지원, 서비스 제공의 질, 전반적인 관리 분야가 있다. 대다수 스태프는 몇몇 팀에 소속되어진다.

## (3) RRG가 수행하는 활동

### ① 업계부담감소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조정과 감독

RRG는 각 부처에 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부처 관계자와 매일 대면한다. 그들은 내각에 제출된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 특정한 감소 조치의 개발을 감독한다. 만약 이것이 행정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개입한다.

관리자들은 적어도 연간 4회 이상 부처를 방문하여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한다. 특정 법률안이 개발 중에 있을 때, 접촉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② 정치적 차원의 감독, 조언 및 보고

두 정부부처의 주 사무국들은 각각의 장관들과 정기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지며 감소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 기회 및 과제들에 대해 평가한다. 보고서는 내각에 제출되어지고,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논의될 수 있게 한다. 의회에는 연 2회의 요약보고서와 2회의 전문 보고서가 제출된다. 의회에 보고하는 구조는 예산보고 기간에 이루어진다.

#### ③ 업계를 위한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된 EU 정책의 조정

2007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EU 규제로부터 발생한 업계의 과도한 규제부담을 알리기 위한 제도적 틀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EU 제안 가운데 국가의 위치에 대한 네덜란드의 의견을 반영한 2008 네덜란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RRG는 EU 문제와 관련된 외교부 관리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 ④ 방법론의 개발, 고급 행정공무원의 교육과 훈련

여기에는 부담감소 주도의 위험분석, 부담감소 주도의 효율성에 대한 과거-미래 평가를 포함한다. RRG는 정부부처에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 또한 ACTAL, REAL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 모델인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고급행정공무원을 위한 일반적인 기초 훈련 코스들이 개발 중에 있다.

## IV.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인식

### 1. 기업의 불만과 정부의 대응

네덜란드 기업들의 대표적인 불만의 이슈는 법률의 빈번한 개정, 엄격성 그리고 규제에 개정이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었다.<sup>19)</sup> 머지않은 장래에 현재의 규제사항들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법률규정이나 규제내용을 위해 항상 그에 순응하는 조직기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새로운 법률이나 또는 규제에 대해 해설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으로서의 하나의 행정부담, 특히 정보제공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등장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을 단순히 정부에서 채택하였는가와 관련해 네덜란드 정부 일각에서도 SCM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 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내세운 행정부담의 25% 감축목표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sup>20)</sup> 특히 정부가 새로운 입법에 대한 인식과 기업이 부담하는 신규비용이 구속적인 경우에는 부담의 계량화는 더 요구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일단 SCM과 같은 비용측정 모델이 만들어진 이상은 이를 운용(적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명한 합의점만 도출된다면 반대요구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성공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19) 필자가 E-mail(2009. 8.)을 통해 ACTAL의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신에 따르면 표준비용모델은 기업들이 행정부담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행정부담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CM is developed because companies complained about administrative burdens. But we did not have a tool to identify the burdens and to calculate how big they are. So SCM is developed because we wanted to deal with a problem that companies notified and because we wanted to be able to analyse the problem properly”.

20) E-Mail 답변내용 중 일부: When all ministries found out that they had to apply SCM, there was some opposition. But not much too. Because the government had set a 25% reduction target, everybody understood that quantification was necessary. In the case of new legislation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new costs for companies was already obligatory. Now they had a method, that is quite easy to apply. As long as there is a clear political momentum opposition is easy to overcome.

## 2. 1차 SCM 모델(2004-2007)의 도입과 성과

네덜란드에서는 법률과 규제로부터 나오는 행정부담의 감축은 이미 1994년 이래로 정치 아젠더로 등장하였다. 1994-2002년 동안 이러한 정책추진의 경험은 행정부담을 축정에 관한 적지 않은 결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한편 2002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행정부담의 통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행정부담의 비교에서 보면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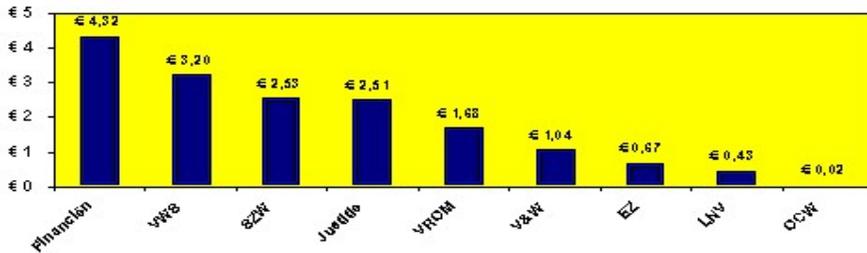
[EU 주요국가의 행정부담 현황]<sup>21)</sup>

국 가	GDP비중(%)	국 가	GDP비중(%)
독 일	2.9 - 3.7	덴마크	1.5 - 1.9
영 국	1.2 - 1.5	폴란드	4.0 - 5.0
프랑스	2.9 - 3.7	그리스	5.4 - 6.8
이탈리아	3.6 - 4.6	핀란드	1.2 - 1.5
스페인	3.6 - 4.6	아일랜드	1.9 - 2.4
네덜란드	2.9 - 3.7	포르투갈	3.6 - 4.6
벨기에	2.2 - 3.8	체코	2.6 - 3.3
오스트리아	3.6 - 4.6	헝가리	5.4 - 6.8

2002년 12월 당시 네덜란드 GDP는 약 4,450억 유로, 정부 부처의 총 행정부담액은 127억~164억 유로로 추정되었고 GDP의 약 2.9~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당시 네덜란드 정부로서는 과도한 행정규제와 최소한의 규제 간에 균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

21)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청(The Dutch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CPB) 2005년 보고서 자료(이병기, 앞의 보고서, p.17에서 수정 후 인용).

해 2007년까지 행정부담을 25%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정 부담의 25% 감축은 GDP의 1.5%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1.7%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1차 SCM의 운용의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그 배경으로 네 가지 요인이 소개되고 있다.<sup>22)</sup> 첫째는, 25%라는 구체적인 행정 비용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부담을 야기하는 법률의 관할 부처인 재무부라는 권력부처가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점, 세 번째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ACTAL과 같은 조직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업비용을 감축하자는 의회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의 과제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아래 표시된 그림은 내각에 대한 행정상의 부담의 전체적인 것을 표시해 놓았다. 2007년 3월 1일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행정상의 손실에 대해 추정되는 총액은 총93억 유로에 이르며, 네덜란드의 GDP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상의 부담의 50%는 유럽법상의 규제 의무로부터 발생하고 나머지 50%는 국내법상의 규제 의무로부터 비롯된다.

22)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9, pp.15-16.



## V. 표준비용모델의 개선

### 1. 1차 SCM 도입의 결과

행정상의 부담은 규제가 부과된 내각의 결과로서 정보책임에 응하도록 알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조직화된 영역의 비용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체적인 그들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CM과 함께 비용부담 측정목록이 만들어졌다.

이 목록(베이스라인 측정)은 행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내각의 운영을 위해 출발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SCM을 통해 다음의 목표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1. 법률에 따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자세한 인식(perception)을 얻는다.
2. 부담의 감소계획은 적절하게 수량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와 출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3. 이러한 계획의 효과와 예정된 법률에 대하여 쉽게 대안을 예측하도록 한다.
4. 정해진 기간 동안, 행정상의 부담의 발달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다.

## 2. 최적화된 SCM을 위한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베이스 측정

2008년 1월부터 개량된 SCM에 따라 새로운 제로-베이스라인 측정을 시작하였다. 이 측정법은 기업가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행정적 부담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략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동안 조사자는 다양한 정보의무에 관해서 기업가의 인식에 대해 측정하는 7가지 질문을 제기했다(행정부담 규제원 결정 수행도 참조).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의무비용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정보의무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에 관한 컨셉이 파악될 수 있다.

기업들이 제로베이스 측정법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로운 표준비용모형은 양과 질 양쪽 모두에 관해서 행정상의 부담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인 접근법은 실질적인 감소에 도달하기 위한 긴급성, 투명성, 자제력을 분별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적접근은 행정상의 부담의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계산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한다.

동시에 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현저한 비용의 감소에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질적인 접근의 경우 우선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할 수 있게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전의 행정부담의 기초측정이 모든 법령상의 행정부담을 한 번에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모든 법률에 대해 SCM을 적용하고 행정부담의 감축을 통해 25%의 감축목표가 모니터링 되도록 하는 것이라 요약해 볼 수 있다.

## 제 3 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 제 1 절 목적과 범위

#### I. 행정부담의 양적측정의 목적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줄여야 하는 근거로 그 준수비용의 과도함을 들 수 있다. 규제비용에 드는 자원을 좀 더 생산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와 규제의 내용인 정보제공의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자유로이 한다면 전체 기업비용을 감소하고 이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은 입법이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정보제공의무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이를 계량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부담의 양적 측정은 Step1(Preparing the survey), Step2(Clarifying the survey), Step3(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obligations), Step 4(Consolidating results)의 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에서는 입법 분야의 목록을 만들고, 행정부담의 총량(zero measurement)을 체크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임원 및 법률전문가의 목록작성이 요구되며 그 결과는 법률의 영역과,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한 누락된 정보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법률전문가에 대해 나타낸다. 제2단계에서는 카테고리 내에 법률과 규정의 분류를 위한 정보의 전달을 조직화하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의사결정나무의 이용해 3가지 카테고리로 정보 의무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의 각 법령의 카테고리를 분류한다. 제4단계에서는 분류와 주요사항 분석의 결과를 통합한다.

표준평가모델의 작성의 목적은 미시적 관점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의 확정과 평가요소의 식별을 위한 계측(Measure)을 위한 가변적 항목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또한 평가모델의 운용은 규제에 의한 경제

전반에 대한 행정부담의 측정을 통해 규제개혁정책의 목표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법률의 수준에서, 정부 측의 규정에 따라, 정부 법률의 범위와 행정부담의 총량(zero measurement)에 대한 통제의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규명될 수 있다.

- 정보제공의무가 설명되고, 법의 조항이 지침으로 활용된다.
- 행정활동의 비용은 시간 x 비율 x 빈도로 자세히 나열된다.
- 대상 그룹 당 기업의 수는 알려져 있다.

나아가 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정부담의 총량을 포함하는 법률에 책임이 있는 정책 임원이나 법률전문가의 목록을 만든다.

대부분의 정부부서들은 표준비용모델을 가진 입법상의 범위 당 행정부담을 정했다. 이 모델은 부서간 프로젝트 관리직의 행정부담에 의해 규정된 출발점에 근거를 둔다. 여러 지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표준 비용 모델은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적절한 기본으로 출현했다.

한편 의사결정 수행도(부록 참조)를 이용하여 3가지 카테고리의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실행을 위해, 정부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비용모델에 의존함으로써 기존의 표준 비용 모델이나 분리된 모델을 통합할 수 있다.

## II. 감축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네덜란드 정부는 2003년 이후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도입한 표준비용모델을 정착화하였다. 그리고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면서 2007년까지 전체 GDP의 3.6%에 해당

하는 164억 유로의 행정비용의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감축대상이 되는 행정부담은 앞서 본바와 같이 10개 주요 법률에서 전체 부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 1. 감축범위의 설정 : 2003년과 2005년 법률안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2003년도 첫 번째 법안(itiatives)의 경우 9개 부처가 작성한 수치와 목록(inventories)에 근거했다. 이러한 수치와 목록은 모든 부처 장관들에 대하여 같은 축소 목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장관들에 대하여 전체 축소 목적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로 10%(보건부)부터 31%(환경부)까지 다양한 행정부담의 축소는 18%의 전체 축소로 합계되었다. 많은 법안들이 장기간의 입법과정 그리고/또는 ICT 해결의 전개에 의하여 이행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부담경감의 대부분은 2006년과 2007년에 실현되도록 계획했다. 2003년에 수립했던 초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05년 법률안에서는 18%에서 25%에 이르는 전체 행정부담 축소를 목표로 하였다. 2005년안의 경우 의미심장하게도 각 부처에 한계점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부담이 기존의 규정으로부터의 부담의 동등한 제거에 의해 상쇄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하면서 종래의 목표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게 됨을 의미한다.

### 2. 행정부담을 구성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유형화

행정부담은 규제적 성격을 가진 정부(유럽공동체)의 규제적 성격의 요구(정보제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행정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용의 계량화를 위한 측정도구로 이용되기 전에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와 행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게 된다(내용상 의무). 또한 정부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나 행동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정보제공 의무). 만일 정보제공의무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부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 경우 그 의무가 정부의 규제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또한 기업에 관해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는 행정부담을 구성한다.

#### (1) 행정부담의 3가지 유형(Categorie)

행정부담이 유럽과 국제적인 수준 또는 국가 수준에 생성된다는 것 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보제공의무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다음 3카테고리를 유형화하였다.

##### ① A카테고리

A유형으로 분류되는 정보제공의무와 이행은 EU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생성된다. 이는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 부처는 제한적인 행정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 ② B카테고리

B유형으로 분류되는 정보제공의무는 EU, 국제적인 법률과 규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실행은 네덜란드에 달려 있다. 행정부담의 성

질과 단계는 정부가 관련된 기구나 정보제공의무 실행을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 ③ C카테고리

C유형으로 분류되는 정보제공의무는 네덜란드 법률제정의 결과 및 규정이다. 정보제공의무와 실행되어야 하는 방법은 네덜란드에 의해 규정된다.

위와 같은 A유형, B유형 그리고 C유형의 분류는 네덜란드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명을 위한 행정부담 기초와 정도, 실행이다. 원칙적으로 A유형은 네덜란드 영향권 밖에 있고 반면에 C유형의 행정부담은 완전히 네덜란드 영향권 안에 있다. B유형은 두 카테고리 사이에 위치하여 실행에 의해서 더 많거나 적은 네덜란드의 영향권에 속한다.

## (2) 정보제공의무의 유형의 결정

연속적이고 일정한 출발점에서 분류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의사결정 수행도가 마련되었다. 의사결정 수행도에서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정보제공의무가 어떤 유형으로 평가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카테고리의 분류가 합리적이고 통일적 출발 포인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수행도를 고안하게 되었다.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제공의무가 어떤 카테고리에 놓이게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①카테고리A와 C의 경우 아래 그림의 질문1과 질문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정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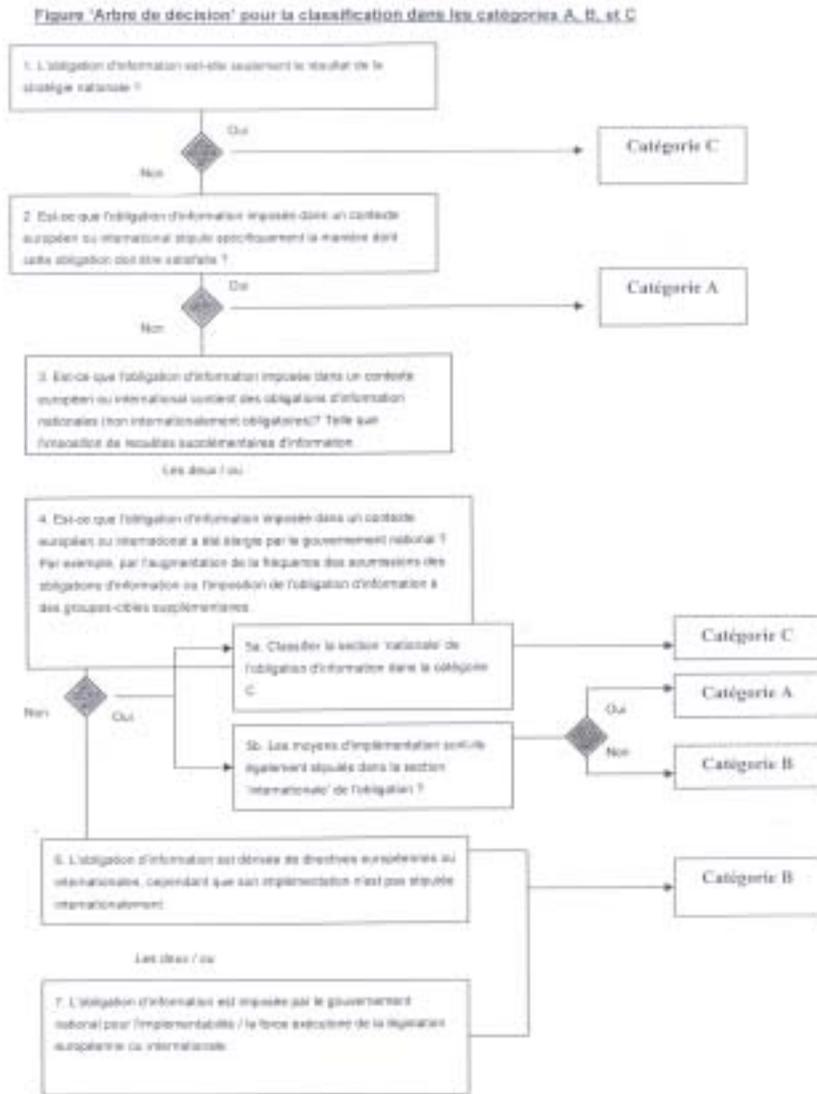
②다음 질문은 네덜란드 정책이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확대되거나 확장되었는가 하는지의 여부이다. 아래 그림의 질문3과 질문4에서 보는 상황이 뒤따를 수 있다.

- 국내법은 국제적인 법률을 규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명한다.
- 국내법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의 빈도수는 국제규정에 따른 경우보다 더 많아야 한다.
- 국내법의 대상 그룹은 국제적인 입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대상 그룹을 포함하고 확장된다.
- 국가 법률과 규정 측정의 정확성은 국제적인 법률과 규정의 정확성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유형화과정에서, 의무부과가 국제적인 정보공개의무의 확대나 확장은 질문5a와 5b와 같이 카테고리 C에 배정된다.

④만일 어떤 정보공개의무가 국제법 규정에서 발생하지만 그 이행이 국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면 질문6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공개의무는 카테고리 B에 배정된다. 마찬가지로, 유럽법이나 국제법의 구체화/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정부가 부과하는 정보공개의무도 카테고리 B에 배정된다(질문 7).

[카테고리 A, B, C분류결정 수형도]23)



23) 이에 대한 국문번역은 부록 참조.

### 3. 구체적 사례<sup>24)</sup>

앞의 그림에서 본 비용부담 결정수형도는 의사결정 또는 정부의 법령, 규제상의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따른다. 이것은 정보제공의무의 행동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해준다.

#### (1) Example 1. The Hallmarking Act(Waarborgwet)

Waarborgwet는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금, 은 또는 백금을 만든 상품을 위한 분석이나 수입품 검인의 문제점을 규제한다. 분석이나 수입품 검인을 위해서 제조업자나 딜러는 제품이나 재고(목록)를 분석협회에 보내야 한다.

의사결정 순서도(decision-making flowchart)를 기본으로 한 분류	
질문 1. 정보제공의무가 전적으로 국내입법을 통해서만 발생하였는가?  Yes. 국제적인 법률은 위의 정보제공의무의 기초가 아니다.  The Hallmarking Act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제공의무는 카테고리 C에서 분류된다.	

#### (2) Example 2.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의사결정(Besluit etikettering koel- en vriesapparatuur)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 장비에 에너지 사용을 나타내는 라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는 공급자와 딜러의 의무를 포함한다.

<sup>24)</sup> 본 자료는 E-Mail을 통해 RRG의 담당자인 Ms. Buitenkamp으로 받은 IPAL의 2003년 8월 작성된 자료(AB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의 일부이다.

의사결정 순서도(decision-making flowchart)를 기본으로 한 분류	
<p>질문 1. 정보제공의무가 전적으로 국내전략(입법)을 통해서만 발생하였는가?</p> <p>No. The European Directive no. 94/2/EC는 전자장비는 에너지 효율의 표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언급한다.</p> <p>질문 2.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동 의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는가?</p> <p>Yes. 첨부된 지침서는 라벨에 충족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 아주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규격, 색, 정보 등). 이 정보제공의무는 카테고리 A에서 분류된다.</p>	

(3) Example 3. 승용차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의사결정

승용차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인용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정보는 라벨의 모양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 정보 제공의무는 승용차의 공급자나 딜러를 위해 규정된다.

의사결정 순서도(decision-making flowchart)를 기본으로 한 분류	
<p>질문 1. 정보제공의무가 전적으로 국내입법을 통해서만 발생하였는가?</p> <p>No. The European Directive no. 1999/94/EC는 새로운 승용차 매매에 관해 CO2방출과 연비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승용차 라벨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p>	

<p>질문 2.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동 의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는가?</p> <p>No. 이것은 의무의 부분에서만 적용 한다; 특정 부분에는 실행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p> <p>질문 3.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가(국제적으로 의무규정화 되지 않은) 국내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가?</p> <p>Yes. 여러 가운데, 상대적인 에너지 사용은 국제적인 맥락에 있는 레벨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는 국가 정책에 의해 규정된다.</p> <p>질문 4.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네덜란드에 의해 확장되었나?</p> <p>No. 정보제공의무는 오직 지침에 기술된 대상 그룹에만 적용하고, 주어진 빈도에 따른다.</p> <p>질문 5a. C에서 정보제공의무의 ‘국가’ 부분을 분류. 다른 국가의 추가와 상대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인하는 정보를 모으고 전파하는데 25%의 시간을 소비한다. 이것은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 25%가 C에 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질문 5b. 정보제공의무에서 ‘국제적인’부분의 실행 방법을 규정하는가?</p> <p>Yes. EU지침에 기인하는 정보를 모으고 전파하는데 나머지 75% 시간을 사용한다. 이 결정의 부록은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고 보여지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이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 75%가 A에 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	--

(4) Example 4. 동물의 종(種)(sperm)과 종 센터에 관한 의사결정

동물의 종과 종 센터에 대한 의사결정은 종이 국제적으로 생산되고 무역될지도 모른다는 조건하에 규정한다. 종 센터는 EU의 지침에 따라 생산된 종과 국가적이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만 한다.

의사결정 순서도(decision-making flowchart)를 기본으로 한 분류	
<p>질문 1. 정보제공의무가 전적으로 국내입법을 통해서만 발생하였는가?</p> <p>No. The European Directive no. 88/407/EC는 국제적으로 생성하고 시장에 내놓아진 종(sperm)에 관한 자료는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p> <p>질문 2.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동 의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는가?</p> <p>No. 지침은 정확한 생산과 시장정보는 등록되어야만 하나, 어떻게 수행되는가는 제공되지 않다는 것을 지침한다.</p> <p>질문 3.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의무가(국제적으로 의무규정화 되지 않은) 국내법상의 정보공개의무를 포함하고 있는가?</p> <p>No. 이것은 추적시스템과 저조한 종의 추적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자료와 관계가 있다.</p> <p>질문 4.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의무가 네덜란드에 의해 확장되었나?</p> <p>Yes. EU의 지침은 오직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종에 관해 지침된다. 네덜란드는 또한 국가 수준에서 시장에 내놓아진 종에 적용하는 의무를 선언했다.</p>	

<p>질문 5a. C에서 정보제공의무의 ‘국가’ 부분을 분류. 현재 시장의 추정을 기초로, 거의 30%의 종이 국가적(전국적)으로 거래된다. 이것은 행정부담의 30%가 C에 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질문 5b. 정보제공의무에서 ‘국제적인’ 부분의 실행 방법을 규정하는가?</p> <p>No. 실행은 회원국가에게 맡긴다. 이것은 이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행정부담의 다른 70%가 B에 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	--

(5) Example 5. 전기법(Electriciteitswet)

The Electricity Act은 전기 네트워크 관리 회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제11조). 제7조과 제78조는 DTe(Dienst uitvoering en toezicht Energie, 네덜란드의 에너지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은 DTe의 정보에 대한 요구응답에 요구된다. 독립적인 전기 네트워크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p>의사결정 순서도(decision-making flowchart)를 기본으로 한 분류</p>	
<p>질문 1. 정보제공의무가 전적으로 국내입법을 통해서만 발생하였는가?</p> <p>No. The European Directive no. 96/92/EC는 전송 네트워크가 이미 이 활동(생산과 유통활동)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다면, 네트워크 관리 회사는 다른 전송네트워크 관련으로부터(생산과 유통활동)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p> <p>질문 2.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p>	

<p style="text-align: center;">공개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동 의무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요구하고 있는가?</p> <p>No. 원칙적으로, 지침은 네트워크 관리 회사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에 연결된 정보제공의무가 없다. 감사는 지침에서 진술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파생한 정보제공의무이다.</p> <p>질문 3.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의무가(국제적으로 의무규정화 되지 않은) 국내법상의 정보공개의무를 포함하고 있는가?</p> <p>No. EU나 국제적인 의무가 없다.</p> <p>질문 4.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네덜란드에 의해 확장되었나?</p> <p>Yes. 감사는 독립 필요조건이 적용하는 대상 그룹(네트워크 관리 회사들)의 사이에서만 수행된다. 지침은 이 감사의 빈도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p> <p>질문 6. 정보제공의무는 EU나 국제적인 지침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시는 국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p> <p>No. 감사는 유럽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 독립 필요조건에서 파생한다.</p> <p>질문 7. 정보제공의무는 EU나 국제적인 법률의 실행가능성과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를 위한 네덜란드에 의해 부과된다.</p> <p>Yes. EU의 지침은 즉각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독립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감사를 도입했다. 네트워크 관리 회사는 협력을 강요받는다. 이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부담은 B에 할당된다.</p>	
--	--

### Ⅲ. 기업이 제공하는 의무의 유형<sup>25)</sup>

기업들이 준수해야하는 정보제공의무는 9가지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구분	정보 제공 의무 형태	내 용	사 례
1	허가나 공제에 관한 지원	특정 활동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로부터의 지원	사업시작에 대한 허가, 건물이나 환경에 대한 허가, 광산채굴권, 대중교통 운영 사업권 등
2	승인에 대한 지원	자연인이나 법인의 특정 요구를 승인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위한 비즈니스로부터의 지원	의료지원기관, 건강보험, 교육기관설립, 주택회사 설립 자격부여
3	등록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등록을 하는 데 있는 위임조항의 충족	-Commercial Registry, manure records에 등록 -비즈니스 등록 개시 : 불만자 등록, 방문자 등록
4	광고	기업이 하는 새로운 업무 활동에 대한 광고	국가나 시에 기업의 새로운 업무 활동이나 거래연관, 상품 위원회와 관련된 광고 -공정자산세에 대한 광고, 산업재해에 대한 광고, 직원의 병가 사퇴에 대한 광고 등
5	신고 (세금, 사회안전 기여 등)	기업의 금전과 관련된 위임조항에 대한 순응	세금 신고 : 세금, 소비세, 사회안전 기여, 환경세 등

25) SCM II (2007), Annex 2.

구분	정보 제공 의무 형태	내 용	사 례
6	보조금 지원	특정 활동에 있어 재정을 통한 기업의 지원	환경 보조금, 보조금, 농업 보조금, 수출 보조금 등
7	회계 납부	비즈니스 운영적 측면에서 소급적 회계 관련 측면에 있어 기업의 순응	매년 회계 평가, 매년 환경 관련 보고, 매년 사회적 보고 및 기타 보고
8	기업 감사	실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관리	감시, 감사, 세무조사, tachograph와 비즈니스 등록에 관한 감시/관리
9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사	정부나 국가조직에서 사용하기 위한 통계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의 보고	세액관련 통계, 생산지수 통계, 거래량, 건강 통계 등

위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는 직접적 적용을 해야 한다, 18가지로 구분가능한 적용 사례가 있다.

연 번	활 동
1	법적 의무 관해서 알게 된 정보를 유지하고 학습하는 것
2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
3	서류 요구
4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
5	데이터 수집 및 평가
6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적용
7	계산과 견적서의 수행

제 3 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연 번	활 동
8	감시, 측정, 조사에 대한 이행
9	추정 결과를 출력하기
10	결과물 확인
11	외부적 권고를 수용하기
12	내부적 자문 유지
13	서류, 공문서 제출 등
14	감사, 감시, 조정에 있어 외부 직원 보조,
15	외부 직원이 필요로 하는 명확한 설명
16	보고서 작성
17	자료 전송
18	전송/수집 정보의 여과

[SCM II 부록상의 산업 분류표]

산업 분야		
1	농업, 축산업, 어업	
	1.1	농업, 원예업
	1.2	축산업
	1.3	어업
	1.4	자연 관리
	1.5	기타
2	산업	
	2.1	광산업

	2.2	금속업
	2.3	화학업
	2.4	식료품업
	2.5	비-식료품
	2.6	폐기물업
	2.7	제약 및 의료장치
	2.8	에너지 및 용수
	2.9	기타
3.	건설업	
	3.1	토건 및 정비
	3.2	토목공사 및 토목공학
	3.3	주택 미장 및 일용직
	3.4	기타
4	도매업	
	4.1	식료품
	4.2	비-식료품
	4.3	기타
5	소매업 및 수공업	
	5.1	식료품
	5.2	비-식료품
	5.3	기타
6	운송	
	6.1	화물 운송
	6.2	승객 운송
	6.3	기타
7	서비스업	
	7.1	숙박업
	7.2	주류업
	7.3	식당업
	7.4	유호업
	7.5	기타
8	비즈니스 서비스	
	8.1	재원 서비스
	8.1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서비스
	8.3	법률 자문 및 부기 서비스
	8.4	자문, 연구·조사 및 광고 대행업
	8.5	일용직 중개업
	8.6	시설 관리업
	8.7	기타
9	예술과 오락	
10	교육과 아동 보호	
	10.1	탁아소

	10.2	놀이방
	10.3	초등 교육
	10.4	중등 교육
	10.5	고등 교육
	10.6	전문 교육
	10.7	기타
11	케어 분야	
	11.1	건강보호
	11.2	요양
	11.3	사회서비스와 지역서비스
	11.4	기타
12	모든 영역	

## 제 2 절 핵심산식의 구성

표준비용의 산정과정은 규제의 중심에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는 데이터제공과 자료요청에 드는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활동의 비용(P)과 자료요청의 연 횟수(Q)를 종합( $\sum P \times Q$ )하여 구체화한다.

기업은 허가 취득과 같은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제공의무와 같은 요건충족을 위해 이를 구성하는 서류나 문서, 일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거나 자료요구(기업의 명칭, 주소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등)에 응해야 한다. 각각의 자료요구는 일정한 수의 기업들에 대해 매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SCM에서 Q를 구성하고, 자료요구가 매년 전달되는 총 횟수를 구성한다.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해 이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들은 일정한 행정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각 활동의 수행은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하고 관련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는 평균비용모델에 있어 P를 구성하고, 특정한 행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구성한다. P와 Q는 준비 중인 규제 법률의 내용인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특정한 비용의 구성을 충족한다.

## I. 행정활동비용(P)

기업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 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각 기업의 행정활동의 수행은 시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의 임금과 같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다. 상기 요소는 평균비용모델 산식( $\sum P \times Q$ )에서 P를 구성하고, 특정한 행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행정활동 비용은 변수인 비용 요소와 시간 요소를 곱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P = \text{비용(단가)} \times \text{시간}]$$

### 1. 비 용

행정활동 비용은 내부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기업 내부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시간요율을 말하고, 후자는 기업조직 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종사하는 자의 시간요율이다.

#### (1) 내부적 비용의 구성요소

##### ① 임금총액

정상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통계치를 말한다.

##### ② 근로자 부담분

휴가보조금비용, 근로자의 보험분담금 및 종종 “13월”의 수당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 ③ 재료비와 일반비용

재료비는 행정상 의무를 만족시키는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종류의 재료비를 나타낸다. 재료비에는 장소비용, 등록시스템의 설치,

세부적이고 유사한 계획에 필요한 재료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비용은 사무실의 비품의 사용, 근무항목, 컴퓨터, 소속부서의 이동의 감가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비와 일반비용은 비록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용 항목이지만, 이들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총임금비용의 내부적 비율의 증가 퍼센티지의 방법으로 추정되어진다.

## (2) 외부적 비용의 구성요소

외부 용역비용은 기업이 법률과 규제를 만족하도록 하는 행정업무나 절차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법률, 행정부처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으로 급여부담분에 대한 시중이율로 보상된다. 세금과 사회보장에 기초한 출연금을 제외한 실질비용이 사용된다.

## 2. 시 간

다양한 기간은 기업이 시행된 주어진 활동에 필요한 시간(분 혹은 시 단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1)과 (2)를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 기업 X가 특정 국가의 국내 규제에 순응하는 보고서(연례)를 작성하고 발간해야만 하는 경우, 그 기업은 회계부서를 통해 계약한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인회계사의 시간당 보수를 200유로(€)라고 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총 30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에 2시간이 걸리고, 시간당 70유로가 든다(이러한 가격율과 기간은 대표사례이다). 그렇다면 기업X의 총행정활동비용( $P_{total}$ ) = 내부비용( $P_{internal}$ )(70€×2) + 외부비용( $P_{external}$ )(200€×30) = 6,140€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II. 자료요구의 연간 요청 횟수(Q)

전달된 자료요청의 횟수는 규제 앞에 놓인 기업의 수와 기업이 자료요청을 받는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Q = \text{기업의 수} \times \text{빈도}$ ).

### 1. 기업의 수(모집단 수)

규제는 기업의 수만큼 이루어진다. 이는 행정부담을 의미하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룹별로 작성되고 기업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빈도

빈도수는 기업이 자료요구를 받는 연간 횟수를 말한다. 연례보고서 작성의무(P 산출의 사례 참조)는 대상기업 X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가의 법인에 대해 부과된다. 총 100,000개의 법인이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1년에 연례보고서를 년 1회 작성하는 의무는 모든 기업에 부과된다. 따라서  $Q = 100,000(\text{기업의 숫자}) \times 1(\text{빈도수}) = 100,000$ 이 된다.

참고로 일정한 경우에는 기업이 통지하였거나 1년 동안의 허가신청 등을 기록한 등록 장부를 참조하여 전달된 자료요구의 연간 횟수를 정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앞의 등록 장부에서 Q를 추출하는 것이 더 용이한데, 이때 등록 장부가 기재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 등록 장부가 연간 행위의 숫자에 전부 기초하였다고 전제한다면 기업의 수는 1과 동등하게 된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대상기업의 숫자나 규제를 통해 산출된 행정부담의 분산을 통해 획득되어 질 수 있다. 한 사례로서 네덜란드 정부의 일정한 요청에 따라 MOT 테스트를 통과한 주차장은 발

급된 취득한 MOT자격증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청은 신고를 등재부에 기재하고 전체 주차장으로부터 받은 신고 숫자를 정확하게 정리한다. 이러한 경우에 Q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록된 정보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정해질 수 있다.

### 제 3 절 세부단계의 기술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의 산출과 측정방식에 대한 합리성과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들 간에 SCM을 통한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시작항목(starting point)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의 세부단계에서 요청되는 사항을 대별한다면, 먼저 앞서 본 핵심산식의 구성요소의 산출과 행정비용측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인터뷰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적 측정을 위한 조사를 위한 부분이 있다.<sup>26)</sup> 그밖에도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서 비용산출의 근거가 되는 규제의 출처와 중첩에 관해 측정정도의 차별화와 관련이 있다.

#### I.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있어 가격, 기간, 기업의 숫자, 빈도수와 같은 4가지 변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1. 가 격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에 대해 통상적으로 어떤 유형(type)의 근로자가 심사 중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문의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에

26)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화와 분석 및 저장, 감축목표의 설정, 법률의 규제와 준수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 등이 함께 검토된다.

서 어떤 타입의 직원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기한 유형의 직원의 임금은 임금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통계치에서 나온 임금이 총액임금인지 근로자 부담분(이러한 부분이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포함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일반비용이 추가된다.

## 2. 시 간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기업과의 면담과 ②크로노미터기법(스톱왓치 기법).<sup>27)</sup>

(정보제공의무의 충족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에 따라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이다. “크로노미터” 기법의 경우 시간을 많이 요한다.

## 3. 대상 기업의 수

대상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수를 정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법률이나 규제 ②정부요구에 따라 작성된 장부(등록장부) ③통계조사.

이러한 정보를 수립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고려하는 데 있다. 만일 최종적인 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요구에 의한 등록은 차선의 방법이 된다.

## 4. 빈도수(횟수)

빈도수를 정하게 해주는 요소는 법률이나 규제, 정부요구에 따라 작성된 장부(등록장부), 통계조사를 들 수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제는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을 위한 시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최

---

27) 이러한 기법은 행위가 현장이나 연구소에서 측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종적인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한 등록은 차선의 방법이 된다.

## II. 조사를 위한 시작항목

### 1. 객관적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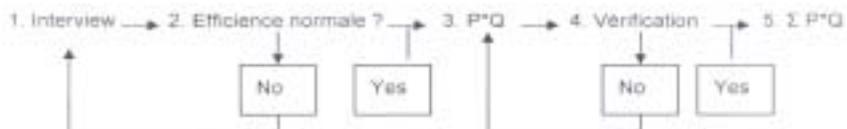
측정과정에서, 가능한 고용주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현에 적합한 주관적 개념(견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측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 -관련기업과 부담의 요구주체인 행정기관- 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에 도달하고 양측 당사자로부터 같이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 2. 결과의 대표성의 담보

계량분석의 전망에 있어 개별적 면담결과는 수치화된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의 대표 전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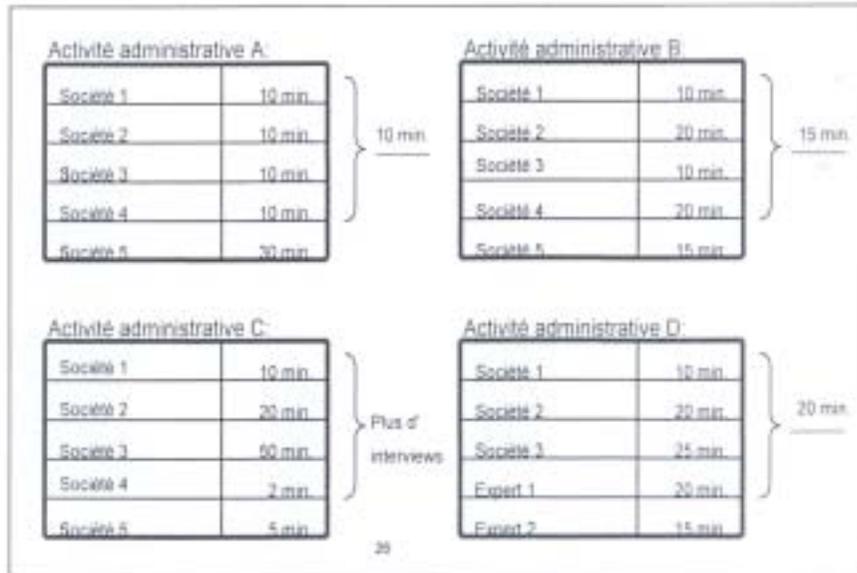
이는 인터뷰가 대상 그룹의 전형적인 회사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도록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는 면담 대상 기업이 대상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에 비추어 비교할 만한 경우라면 사용될 수 있다. 아래 그룹의 1-5 단계는 인터뷰를 통해 획득하는 결과의 대표성을 보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인터뷰 평가를 위한 다이어그램]



1. 인터뷰 → 2.평균적 효율성? → 3. P×Q → 4.확인 → 5. ΣP×Q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행정부담에 관한 정보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다. 필요한 면담의 숫자는 관련된 규제 가운데 포함된 분야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점은 면담을 통해 얻게 된 정보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기업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인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 측의 대답은 대상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행정활동A			행정활동B		
회사1	10분			회사1	
회사2	10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사2	20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사3	10분	10분	회사3	10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사4	10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사3	20분	
회사5	30분		회사4	15분	

행정활동C		□□ 더 많은 면담 □□	행정활동D		□□ 20 분 □□
회사1	10분		회사1	10분	
회사2	20분	회사2	20분		
회사3	50분	회사3	25분		
회사4	2분	회사3	20분		
회사5	5분	회사4	15분		

위 그림의 경우 행정업무에 있어 회사5는 정상적으로 효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5는) 고려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활동 C와 관련해 우리는 가장 많은 수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행정활동을 위한 대상그룹에서의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정부담의 결정( $P \times Q$ )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것은 기업 전체에 대한 행정부담의 최초의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확인과정(Verification)은 제4단계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단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보, 대상그룹의 대표자에게 재이송된 가정과 산출결과의 사실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산출된 행정부담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지 방침을 형성하게 된다.

### 3. 가정적 요소의 제거

가능한 가정은 회피되어야만 한다. 행정부담을 위해 사용된 정보는 신뢰성 있는 요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부담 산출을 위해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은 모델에서 가시적이어야 하고 이를 기술한 보고서상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 4. 복합적 기능을 가진 데이터

일정한 수의 기업에서 데이터의 등록은 법률과 규제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목표를 인식하게 된다. 복합적 목표를 가진 등록의 총비용은 검토 중인 법률이나 규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사례를 들어 가축상(家畜商)에게 있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동물의 생산품처럼, 자신의 축사에 있는 가축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행위는 가축상의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구성한다. 하지만 가축상과 관련된 다른 규제는 문제된 데이터를 동일하게 보전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문서보관이 가져오는 가축상이 가지는 부담은 실제로는 총 행정부담(비용)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5. 법률과 규제의 준수

현행 규제에 필요하게 드는 비용을 위해 예기하지 않았던 추가 개선비용은 행정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부담은 현존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있는 법률과 규제의 빈번한 개정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나오며 보고서의 별도 항목에 그 측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편 관세에 대한 규제는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관세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공보를 참조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한다. 다국적기업과 운송업자들은 이러한 연수(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관세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만족하는 방법이 된다. 관세의 규제 대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으로서는 행정부담이라 할 수 있다.

## 6. 감축목표(매출액 감소)의 평가

행정부담의 정의에 따라 매출액(매상고)의 감소는 행정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세관 당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업이 행정허가를 얻기 위한 수속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은 행정부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들어간 시간으로 인해 입은 매출액의 감소는 행정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행정부담이 반드시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행정부담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정보제공을 이행하기 위해 인정된 것만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7. (법률의) 완전(전부)준수

원칙상 행정부담은 항상 법률을 전부 준수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특정한 경우에, 예를 들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법률의) 100% 준수에 대한 측정에 기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준수 기준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Ⅲ. 보고서작성을 위한 출발사항

표준비용모델은 작성된 행정부담의 보고서(Rapport) 내용이 어떤 정보제공의무가 검토되었는가(가능하다면 법률의 조항)를 밝히고 있고, 정보제공의무에서 요청된 자료요청 제공을 위해 기업들이 어떤 행정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어떻게 비용이 산출되었는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에 표준비용모델은 규제의 변경과 외생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계산의 추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능해야 한다. 보고서<sup>28)</sup>는 적어도 각 정보의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만족하는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 1. 행정활동비용(P)과 빈도(Q)

### (1) 비 용

비용의 경우 자료요청이나 보고서를 위해 되도록이면 법률에 정한 평균내부비용 혹은 외부비용이 사용된다. 가능하다면 기능수준별 요금에 적합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만일 적용된 요금이 내부 혹은 외부 비용이라면 측정상의 평가비용표는 명료하게 나타난다.

### (2) 빈 도

평가를 위한 이러한 비용모델에 규제의 개선안과 대체수단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별도의 항목도 동일하게 포함된다.

## 2. 규제의 중첩 및 중복계산

관련된 부서에서 다른 규제결정과의 중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에서 대해 보고서나 비용평가모델에서 이를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 규제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정보제공의무의 중복계산과 등록을 피해야 한다. 관련 정보제공 책임부서는 첫 번째 서명하는 부서의 장관의 서명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농지계약법(Pachtwet)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동 법률의 부서(副書)자 중 일부인데, 동 법률을 개정하면서 농림수산부장관도 개정 법률에 부서

---

28) 보고서는 간략한 도표형식이나 추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다 정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였다면, 농지계약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정부담은 법무부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행정부담은 농림수산부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

#### 제 4 절 표준비용의 산정

행정부담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함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기업 군을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기업의 섹터나 규모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표준비용의 산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다시 말하면 조직이나 공정의 규모도 마찬가지로 행정부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소규모 기업으로서는 매우 높은 비용의 부담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도 요구되는 행정활동의 양이나 복잡함에 따라 매우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됨을 뜻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행정상 의무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개별적인 자료요청을 식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경험에 의하면 전략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감축가능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 측정이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의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뷰의 경우, 보고서상의 정보가 개별 기업에 대한 추적이나 추측이 가능하지 않는 한 접촉했던 조직이나 팀을 언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뷰의 그 측정이나 실행은 항상 정보제공의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된 자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 제 4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담을 감축하려는 각국의 조치와 노력은 유럽차원(이른바 2000년 리스본 전략)에서 유럽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과 각 나라에서의 규제완화(규범의 인플레이션, 규제적 성격의 입법의 질적 제고)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부담의 감축은 GDP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며 국가의 경쟁력강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한 가이드 모델로서 네덜란드 모델이 채택된 이유는 네덜란드가 최초로 상기한 구체적 수치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부담의 추정비용 산정과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전략목표와 실행메커니즘을 제공한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이 제시해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나 국제차원의 법에서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추정하는 비교적 간이하면서도 일관성을 가진 방법이다.

표준비용모델이 지향하는 바는 개별적 규제의 정책목표가 아니고, 또한 확정 값이 아닌 계량화된 추정치라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순응을 위해 수행되는 정보제공 활동에 드는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마도 이점은 규제의 합리성에 관한 가치 판단 비용 산정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향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개선되고 발전되는 모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새로운 기법상의 발전이 보여줄 성과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

**2. 네덜란드에서 시도한 표준비용모델은 현재 유럽연합의 제도화된 표준비용모델의 기본모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의 측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추진하였고, 그 성과를 이룩한 점 및 이후 유럽공동체 뿐 아니라 OECD 차원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용되는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담의 추정의 경우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과 각국에서의 변형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 표준비용의 설계를 위한 행정부담의 용어 설정과 정의, 핵심추정 공식, 간접비용 및 정확한 수량변수와 가격변수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sup>29)</sup>

**3. 표준비용모델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부담의 경감체계를 갖추게 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물론 행정부담의 측정과 운영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고는 하나 네덜란드의 경우 약 3천 5백만 유로(행정부담 측정에 1천만 유로, 조직체계 구축에 2천 5백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지만 SCM 실시 후 약 67억 유로의 GDP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0)</sup>

보상이 없는 투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 생산, 성장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며, 규제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확대시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새로운 규제 인플레이에 대한 정부규제를 개선할 견고한 방법과 기존의 규제에 의해

29)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9, p.15.

30) 김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표준비용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제12권 제2호, 2005. 12., p.65.

부과된 부담을 경감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평가<sup>31)</sup>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4. 표준비용모델의 현실화는 규제정책과 행정의 간소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인 정보통신기술체계가 요구된다.**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통심시스템의 선진화로 인해 막대한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행정부담의 측정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는 적지 않은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나 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축비용으로 예상되는 동 비용은 간소화된 규제와 관료적 업무과정의 개선에 따른 편익을 고려한다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따라 처리된 데이터의 활용은 이른바 e-정부의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부담의 감소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의 재편과 기 축적된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한다.<sup>32)</sup>

---

31) 김신, 앞의 논문, p.66.

32) 이병기, 앞의 보고서, pp.46-47.

## 참 고 문 헌

김 신,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5.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  
경제연구원, 2009.

ACTAL, Annuel Report, Hague, 2006.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gulation -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Cabinet Office Publication&Publicity, London,  
2005.

IPAL, Administrative Burdens, Hague, November 2006.

OECD &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2009.

Le Modèle des Coûts Standard -Un cadre permettant de définir et de  
quantifier les charges administratives pour les entreprise, 2004(프  
랑스어 판, 네덜란드어 판은 2003년 12월 헤이그에서 발행).

Memorandum of the Dutch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CPB),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7 April 2004.

Regulatory Reform Group, Better Regulations, better Business, Hague,  
2008.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국제표준비용모델네트워크)

<http://www.berr.gov.uk/aboutus/index.html>(영국BIS)

<http://www.ez.nl/english/Organisation/> (네덜란드 경제청)

참 고 문 헌

<http://www.compliancecosts.com> (네덜란드 규제개혁청)

<http://www.actan.nl/> (네덜란드ACTAL)

부  
속

[부 록]

**표준비용모델**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LE MODÈLE DES COÛTS STANDARD**  
**Un cadre permettant de définir et de quantifier les**  
**charges administratives pour les entreprises**

**2004년 8월**

# 목 차

제 1 장 서 론 ..... 83

## 제 1 부 행정부담을 통해 무엇을 아는가?

제 2 장 행정부담의 정의 ..... 87

2.1 서 ..... 87

2.2 행정부담을 야기하는 정보제공의무 ..... 88

2.2.1 제1단계 :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무엇을 아는가? ..... 88

2.2.2 제2단계 : 규제와 비규제 ..... 89

2.2.3 제3단계 : 어떤 기업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 91

2.3 행정부담 결정 수형도(樹型圖)(Arbre de décision CA) ..... 93

## 제 2 부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어떻게 행정부담을 측정하는가?

제 3 장 행정부담에 관련된 비용은 무엇인가? ..... 97

3.1 서 ..... 97

3.2 규제비용 ..... 97

3.2.1 재정비용 ..... 98

3.2.2 규제준수에 관련된 비용 ..... 98

3.3 행정부담 ..... 99

제 4 장 표준비용모델 .....	103
4.1 서 .....	103
4.2 왜 표준비용모델인가? .....	103
4.3 표준비용모델의 구성 .....	104
4.3.1 기본구조 .....	104
4.3.2 P와 Q의 구성요소 .....	106
4.4 표준비용모델의 출발점 .....	110
4.5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	119
4.5.1 측정정도를 차별화하는 방법 .....	120
4.5.2 측정의 선택 .....	121
제 5 장 표준비용모델의 기초측정에서 변경사항의 등록 ..	123
5.1 서 .....	123
5.2 행정부담의 추가분과 감소분의 측정 .....	123
5.2.1 새로운 정보제공의무 혹은 수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행정부담의 측정 .....	123
5.2.2 기술적 변경조치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의 측정 .....	127
5.3 기초측정의 유지 .....	128
<b>제 3 부 행정부담의 기초를 어떻게 식별하는가?</b>	
제 6 장 행정부담의 기초 .....	131
6.1 서 .....	131
6.2 구별을 위한 결정 수형도(樹型圖, l'arbre de décision) .....	132

[별첨 1] 행정부담 정의에 관한 질문지 .....	135
[별첨 2] 정보제공의무와 행정활동의 유형 .....	139
[별첨 3] 정보제공의무의 결정 수형도와 관련한 질문지 ....	147
[별첨 4] 내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기준율에 관한 목록 ....	151

## 제 1 장 서 론

기업들은 빈번하게 자신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제공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제공 질의가 항상 명료하지 않으며 질문의 반복과 빈번함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사실, 기업들로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행정부담을 충족하는데 쏟기 보다는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에 투자하기를 더 선호한다.

행정부담에 관한 의문과 부담의 양의 측정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1)행정부담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2)행정부담의 총량을 계산하는 기법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본서는 위 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줄 것이며, 다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 부 : 행정부담을 통해 무엇을 아는가?

제1부는 기업들이 행정부담에 당면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유용한 기본적 내용(제2장)을 제공한다.

### 제 2 부 : 어떻게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가?

제2부는 행정부담의 계산을 위해 잠재된 기법을 위한 기본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표준비용모델의 실행과정에서 사용된 출발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3장은 시행되는 규제에 행정비용의 일람제공을 통해 배경을 제공한다. 제4장은 현존하는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모델의 구성과 기능 및 시작 포인트를 정의한다.

현존하는 행정부담 전체를 측정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행정부담의 점검과정에서 신규 및 개정된

[부 록]

규제들이 양정되고 포함되어야 하고 (2)적절한 내용 변수가 추가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기초측정조사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 **제 3 부: 행정부담의 기초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규제화 작업의 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특히 규정의 간소화 분야를 가능한 식별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다면- 규제의 원인(les origines)을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그 규제를 유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부 록**

본 가이드는 3개의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부록은 표준비용 모델에서 자주 제기된 특정 질문사항에 대해 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보제공의무와 행정활동을 연결하는 아주 공통적인 유형의 예를 제공한다. 세 번째 부록은 정보제공의무의 유형의 결정에 사용되는 결정 수형도에 관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특정한 질문에 관해 답하고 있다.

## 제 1 부

### 행정부담을 통해 무엇을 아는가?

## 제 2 장 행정부담의 정의

### 2.1 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용의 계량화를 위한 측정도구로 이용되기 전에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와 행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게 된다(내용상 의무). 또한 정부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나 행동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정보제공 의무).

내용상 의무와 정보제공 의무의 구별 예:

내용상 의무의 사례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 것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고, 반면에 연례 보고서 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

언급된 상기의 의무는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보제공 의무에 든 비용만이 행정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행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행정비용은 기업들이 정부규제(la réglementation gouvernementale)에서 나오는 정보제공의무(les obligations d'informations)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이들 기업(entreprises)에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장(Chapitre)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행정부담으로 귀결되는 행정비용이 되는가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후속하는 단락에서는 행정비용을 정의하

[부 록]

는데 적절한 핵심요소와 기초원칙 대해 살펴본다.

비용측면은 제3장에서 자세히 상론한다. 제3장에서는 행정비용의 유효측정과 관련된 지침에 관한 제2부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자주 제기되는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후기하는 [부록1]에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 2.2 행정부담을 야기하는 정보제공의무

### 2.2.1 제1단계 :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무엇을 아는가?

####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는 정보를 구하거나 준비하여 공권력이나 제3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이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 각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들이 보고해야 하는 일정한 정보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참 고.

제3자에 대한 의무(Les obligations faites à des tierce partie)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업에게는 행정비용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사인이나 소비자가 일상적이다)에 대해 특정한 제품의 담당자나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보제공의무는 반드시 기업이 공권력이나 제3자에게 정보를 발송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제공의무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를 보내주어야 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요구되기도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사례

행정당국에 대해: 기업소득 신고양식, 연간 재정등록상태, 허가신청서, 상업등록장부 보관을 위한 일반의무규정, 근로조건 감독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정보의 제공,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연간 보고, 근로사업장의 감독사항 등.

제3자에 대해:

이사회, 재무상황표(l'encart financier)의 제공의무, 상품의 품목표(라벨)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의약품과 기타 상품의 사용에 관한 지시, 상품수송과정에서의 발송장, 특정거래상의 영수증 발급의무 등

자료제공(message)의 사례

법인 명칭, 주소지, 양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

후술하는 [부록2]에서 가장 공통적인 정보제공의무와 이와 관련된 행정청의 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2 제2단계 : 규제와 비규제

정보제공의무가 행정비용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한 기본요건은 정부가 부과한 규제의 존재에 있다. 법률 규정에서 정부나 정보의무의 ‘제공받는 당사자’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부과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규제(Réglementation)

일반적으로 규제는 구속적(constraining)이며(법률, 법적행위, 데크레(총리령), 국사원 데크레, 부령) 정책적 규제(réglementation stratégique/ policy regulation)를 말한다.

[부 록]

일반적으로, 구속적 성격의 규제는 분권화된 정부기관(les autorités gouvernementales décentralisées, 예를 들면 지방정부)이 내린 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반면에 기술한 구속적 성격의 규제와는 달리 정부가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화된 일반규제(une réglementation générale)인 정책적 규제가 있다.

측정대상이 되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해 국내법상의 규제를 통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만이 측정된다.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EU의 규제는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제의 모든 요소들이 의무적이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반면에 EU의 지침/디렉티브(Directive)는 회원국이 자국의 규제를 매개로 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측정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Gouvernement)**

모든 정부의 구성원(Tous les corps de gouvernement)은 기본적으로 정부 자신에 의해 통제되고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부처는 모든 정부기관을 포함하며, 후자가 대사관과 같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비정부단체(Non-Gouvernement)**

영리단체(조직), OECD나 국제법원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과 국제기구 조직은 정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참 고 : 비영리법인(Le volontariat)**

정보비용이 행정부담의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지 문의가 있을 때에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년 기업은 법률이나 규제의 준수에 따른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규제의 측정은 필요하며 후속하는 잠정

적인 간소화 영역에서 식별되어 질 수 있다.

사 례

만일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행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발적인 행위이지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청을 받게 된다. 기업이 허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행정부담(des charges administratives)으로 평가될 수 있게 된다.

참 고 : 자율규제(Autoréglementation)

기업은 또한 자율규제에 연관된 정보제공의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은 정부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므로 행정비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법령을 통해 이러한 자율규제를 규정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기업 측에서 보면 행정비용에 속하는 사항이 된다.

결 론

행정부담은 규제를 위해 가장 높게 가능한 개념에 수반되는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나오는 비용을 말한다.

### 2.2.3 제3단계 : 어떤 기업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표준비용모델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측정하는 목적은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의 행정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의 간소화와 행정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지를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은 개념으로

[부 록]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기업을 한 가지 방식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윤의 동기여부는 두 가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요한 차이점은 기업이 공적 섹터의 자본에 의한 경우에 나타나는 방식에 있다. 따라서 특정 법률에서 공적 소유의 기업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에 대한 정의는 평가하는 법률의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관한 2가지 정의 :

**정 의 A**

기업이란 용어는 공공 행정의 공적 부분, 정부의 서비스와 의무적인 사회보험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전기한 예외부분의 사적 부분은 우리가 ‘기업(entreprise)’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매우 중첩된다(coincident bien). 기본적인 구별기준은 조직이 자신의 비용을 통해 조달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에 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정 의 B**

기업이란 용어는 총체적 의미에서 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들의 목표중 하나는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이러한 총체는 공공당국의 전체 혹은 부분적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는 명백하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중을 위한 공적 섹터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상이거나 가격이 생산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적 섹터에 속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너무나 빈번하게도 이러한 유형의 기업은 회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기업은 일반적(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중한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정의는 스포츠클럽이나 조합과 같은 사적 성격의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도 배제한다. 이러한 조직의 공통적 징표는 이들 활동이 수익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종 특정한 기업에 고유한 모델에 따라 조직되고 제한적 책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단체를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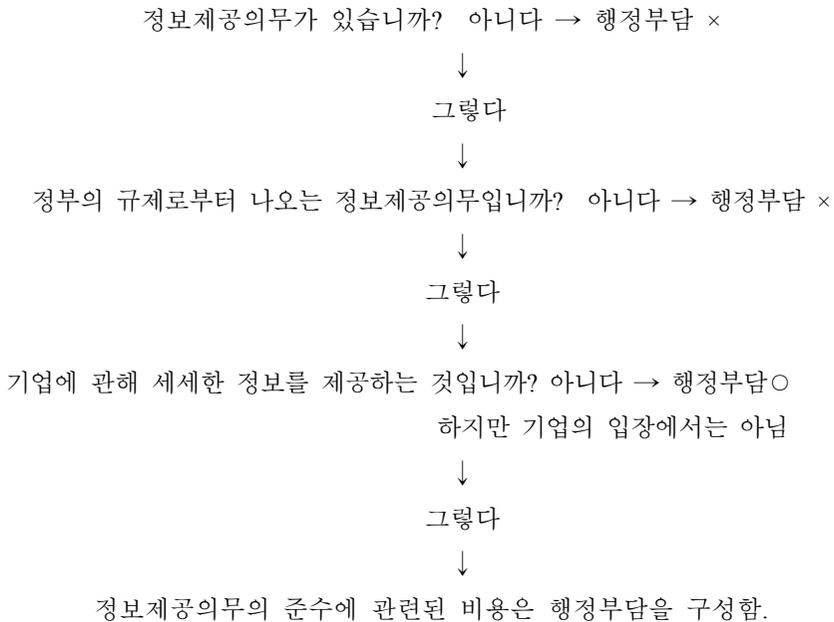
표준비용모델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적용되는 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평가 간의 비교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측정상의 미미한 차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 2.3 행정부담 결정 수형도(樹型圖)(Arbre de décision CA)

다음 수형도는 앞서 기술했던 행정부담의 결정과정을 다시 보여준다. 이러한 행정부담의 여부에 관한 수형도는 기업 측이 행정 부담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신속하게 인식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행정부담 결정 수형도



**제 2 부**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어떻게**  
**행정부담을 측정하는가?**

## 제 3 장 행정부담에 관련된 비용은 무엇인가?

### 3.1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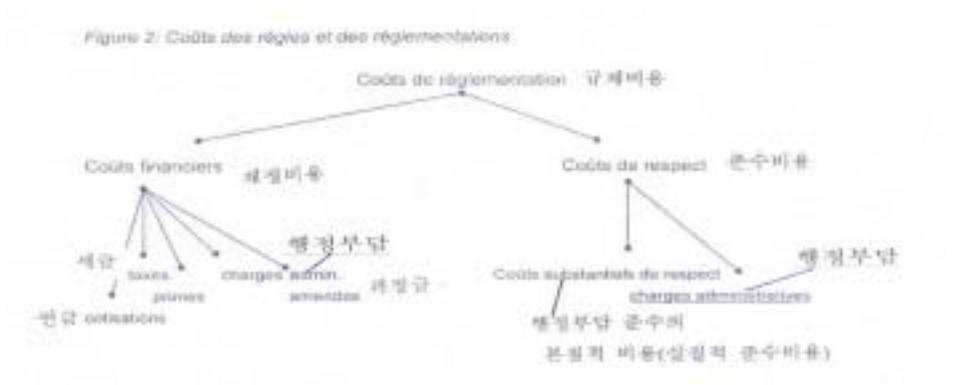
행정부담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담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식별해야만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규제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시작하기로 한다.

### 3.2 규제비용

행정부담은 법령과 규제의 전체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락에서는 규제의 준수에 드는 여타비용과 다른 재정비용을 연결해서 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기업들은 수많은 규정과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부과하는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배분되어 나타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2]는 기업들이 법률과 규제로부터 지출하게 되는 비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그림2] 법규와 규제비용



### 3.2.1 재정비용

재정비용은 정부나 권한기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이전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이 비용은 정부 측에서 가지는 정보의 필요성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 재정비용의 사례

재정비용은 세금, 행정부담, 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행정부담은 실제로 출연금인데, 달리 말하면, 전자는 개별적이고 증명가능한 (서비스)의 대가로 정부에 대한 지불(paiement)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정부(혹은 권한기관)에 대해 제공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부담은 그 개념과 일치하게 계산할 수 없다. 행정부담의 사례로 건축허가 신청에 수반된 비용을 들 수 있다.

### 3.2.2 규제준수에 관련된 비용

규제준수비용은 기업이 (부과된)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 앞에서 기술한 재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은 ‘규제준수의 본질적 비용(실질적 준수비용)’과 ‘행정부담’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업에서 생산 공정(procesus)이나 생산제품에 관해 법률이나 규제가 요구하는 내용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 규제준수의 본질적 비용(실질적 준수비용)의 사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환경상 요구되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여과장치 비용,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드는 비용, 전문적 기술습득에 관련되거나 특별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등.

행정부담은 규제상 포함된 정보제공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행정부담의 사례

다음에서 나오는 비용이다 : 배출측정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능력이나 자격.

### 3.3 행정부담

전기한 단락에서 행정부담은 전체적인 준수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가운데서 기업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은 추가적 비용만인가 혹은 전체비용에 관한 것인가? 행정부담에 들어가는 비용의 구성부분은 어떤 것인가? 금전상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건비와 이른바 ‘염증나는 비용(과민비용)(coûts d'irritation)’을 포함할 것인가? 예외적 비용으로 부가된 구조비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만 하는가?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게 될 것이다.

● 객관적 부담

행정부담은 행정부담을 계량하는 동안 유용하게 계측 가능한 한 충분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특정비용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부담의 수량의 검사과정에서, 기업이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주관적인 의미에서 느끼는 부담(“염증나는 비용(과민비용), les coûts d'irritation”)처럼 받아들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부담을 ‘부담항목’의 의미에서 객관적인 부담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

[부 록]

한 것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염증나는 비용(과민비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후에 기업에 대해 가능한 압력이 될 수 있는 (규제당국의) 결정은 이러한 ‘염증나는 비용(과민비용)’에 포함하게 된다. 사실, ‘염증나는 비용(과민비용)’은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비용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당연히 제거될 수 있다.

객관적 부담의 사례

작업에 관련된 비용, 외부용역(下請), 자재, 간접적 부담에 드는 비용(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4장을 참조)

● 비용일 뿐이고 수익(이득)이 아니다

규제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의무의 충족을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측정되어야만 하는 규제에서 나타난 것이라야 한다. 문제된 규제로부터 이익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비용에 가져오는 편익이 있는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측정이 이루어진 후에 정책결정자에게 되돌아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수입이 아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수익은 정보제공의무 과정에서 무시되어야 한다.

● 매상고의 손실

행정부담의 정의는 매출액의 감소를 행정부담으로 간주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법적 정보제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행정부담에 계상할 수 있다.

● 상 환

행정활동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P=0$ 인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업이 받게 되는 법률상 정보제공의무, 수익성 있는 상황은 행정부담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예외적 비용

기업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투자해야만 하는 예외적 실질 비용은 가치하락 기간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계량되어야 한다. 물론 무시할 정도의 예외적 비용이라면 측량의 필요성이 없지만 보상항목과 같이 양적으로 예외적 보상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따라야 한다.

기업이 법률 규정과 빈번하게 개정되는 규제에 따르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행정부담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이라도 어떠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규제라면 행정부담을 구성하지 않는다.

● 새로운 법률과 최근 규제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법률과 최근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동의한 비용은 행정부담이 된다. 이러한 비용이 사전에 계량화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총 준수비용

행정부담은 추정치로 계산되며 법률 규정을 100% 준수한다고 전제한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모든 기업이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 록]

● 복합적 기능

일부 특정기업의 경우 데이터 등록은 법률과 규제로부터 나오는 의무 만족과 다른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복합적 목적을 가진 정보등록의 총비용은 법률이나 규제에 관한 행정부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다른 법률의 영역과 경합

둘 이상의 법률의 영역에서 겹쳐지는 경우(서로 다른 두 부분에서 같은 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보고서상의 핵심비용은 다른 한 부분에서 실시한 측정에 기초한 별도의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두 법률의 절반(50%/50%)으로 분할된다.

## 제 4 장 표준비용모델

### 4.1 서

행정비용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비용들이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결정되고 나면 문제가 되는 행정비용을 계량할 수 있게 된다. 정량화(定量化) 작업은 통일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된 기법이 바로 표준 비용 모델이다.

### 4.2 왜 표준비용모델인가?

표준비용모델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걸쳐 정부부처나 국가의 규제로부터 나오는 행정비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표준비용모델은 다음을 가능하게 해준다: ①국내 차원에서 각 법률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상세한 세부 사항과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용과 효과의 감축제안의 정확한 양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법률과 규제의 대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의 행정비용의 증가에 대한 (법률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한다.

②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에서의 규제체계와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실례를 인정하는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하고, EU디렉티브가 다른 회원국 규제에서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평가한다.

표준비용모델이 가능한 많은 사항들을 담고 있는 도구이지만 현실상의 이론적인 접근치가 있다. 달리 말해 계량화된 행정비용은 실제 비용의 근사치일 뿐이며, 종종 가정치를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에서 본 지침서에서는 후술하는 4.4에서 행정비용의 측정에

[부 록]

사용된 출발점을 담고 있다. 이하 4.3에서는 우선 표준비용모델에 포함된 기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4.3 표준비용모델의 구성

### 4.3.1 기본구조

표준비용모델은 규제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비용의 측정의 초기에는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지도화(soigneusement mappée)하는 검토에 놓이게 된다. 정보제공의무(필요적 의무의 예로 허가의 취득)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보제공의무를 구성하는 문서나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하거나 자료요구(기업의 명칭, 주소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등)에 응해야 한다.

각각의 자료요구는 일정한 수의 기업들에 대해 매년 몇 차례에 걸쳐 전달해야 하는데 평균비용모델(SCM)에서 Q를 구성하고, 자료요구가 매년 전달되는 총 횟수를 구성한다.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해 이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들은 일정한 행정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각 활동의 수행은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하고 관련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는 평균비용모델에 있어 P를 구성하고, 특정한 행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구성한다.

P와 Q는 검토 중인 법률상의 내용인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특정한 비용의 구성을 충족한다.

검토 중인 규제,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과 비용구성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그림3] 표준비용모델의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

규제A

정보제공의무1 — 자료요구1 — 행정활동1 — 가격(P)과 양(Q)  
 정보제공의무2 — 자료요구2 — 행정활동2  
 정보제공의무n — 자료요구n — 행정활동n



17가지 정보제공의무의 사례  
 경험을 통해 정보제공의무는 유사한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모든 정보제공의무는 주요 17개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부록2에서 이러한 17개 의무 유형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행정활동의 사례  
 데이터의 수령, 필요한 정보의 수집, 필요한 정보의 처리나 게시행위, 산출 내지는 평가의 실시, 산출결과의 인쇄나 복사,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 작성 행위.

통상적으로 능률적인 기업이라면 시간과 비용의 추정치는 표준화된다는 사실은 표준비용모델에 있어 하나의 기초적 전제(추정)가 된다.

[부 록]

표준화는 각 부분에서 법률에서 요구되는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는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이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데이터 양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은, 대상기업들 중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고나 최악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4.3.2 P와 Q의 구성요소

앞 단락에서는 행정부담의 산출에 있어 P와 Q가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기술하였다. 후술하는 단락에서는 P와 Q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P : 행정활동비용**

행정활동비용(P)은 다음 공식과 부합하여 결정된다:

$$P = \text{비용(단가)} \times \text{시간}$$

행정활동비용은 두 가지의 변수에 따라 산출된다.

- 비용(단가)
- 시간

#### ● 비 용

두 종류의 비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내부적 비용은 기업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다. 외부적 비용은 조직 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종사하는 자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다. 비용은, 예를 들면 외부용역과 회계의 시간당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은

대상 그룹과 행정활동에 따라 매우 폭넓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내부적 비용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어 진다:

- 임금총액

정상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통계치로서의 임금에 관한 것이다.

- 근로자 부담분

휴가보조금비용, 근로자의 보험분담금 및 종종 “13월”의 수당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 재료비와 일반비용

재료비는 행정상 의무를 만족시키는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종류의 재료비를 나타낸다. 재료비에는 장소비용, 등록시스템의 설치, 세부적이고 유사한 계획에 필요한 재료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비용은 사무실의 비품의 사용, 근무항목, 컴퓨터, 소속부서 이동의 감가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재료비와 일반비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용항목이지만, 이들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은 총임금비용의 내부적 비율의 증가 퍼센티지의 방법으로 추정되어진다.

외부적 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외부용역비용

기업이 법률과 규제를 만족하도록 하는 행정업무나 절차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법률, 행정부처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으로 급여부담분에 대한 시중이율로 보상된다. 세금과 사회보장에

[부 록]

기초한 출연금을 제외한 실질비용이 사용된다.

● 시 간

다양한 기간은 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주어진 활동에 필요한 시간(분 혹은 시 단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P(행정활동비용) 산출을 위한 사례  
기업자(X)가 특정 국가의 국내 규제에 순응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하도록 구속되는 경우 그 기업은 회계부서를 통해 계약한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시간당 임금은 200유로이다.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해 총 30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은 공인회계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련지우고 이송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에 2시간이 걸리고 시간당 70유로가 든다(이러한 가격률과 기간은 대표사례이다).

총행정활동비용(Ptotal)

=내부비용(Pinterne)(70유로×2)+외부비용(Pexterne)(200유로×30)=6,140유로

Q: 자료요구의 연간 요청 횟수

전달된 자료요청의 횟수는 (1)규제 앞에 놓인 기업의 숫자와 (2)이러한 기업이 자료요청을 받는 빈도수에 따라 결정된다.

$$Q = \text{기업의 수} \times \text{빈도수}$$

Q의 산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수와 빈도수 두 가지 변수가 사용된다.

- 기업의 수(모집단 수)

규제는 기업의 수만큼 이루어진다. 이는 행정부담을 의미하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그룹별로 작성되고 기업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빈도수

빈도수는 기업이 자료요구를 받는 연간 횟수를 말한다.

Q 산출의 사례

연례보고서 작성의무(P 산출의 사례 참조)는 대상기업 X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그 국가의 법인에 대해 부과된다. 총 100,000개의 법인이 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1년에 연례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는 의무는 모든 기업에 부과된다. 따라서 Q는 아래와 같이 된다.

$$Q=100,000(\text{기업의 숫자})\times 1(\text{빈도수})= 100,000$$

총 행정부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무에 상응한다.

$$\text{총 비용}=P(6,140)\times Q(100,000)= 614,000,000\text{유로}$$

참 고 :

일정한 경우에, 기업이 통지하였거나 1년 동안의 허가신청 등을 기록한 등록 장부를 참조하여 전달된 자료요구의 연간 횟수를 정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전기한 등록 장부에서 Q를 추출하는 것이 더 용이한데, 이때 등록 장부가 기재완료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 등록 장부가 연간 행위의 숫자에 전부 기초하였다고 전제한다면 기업의 수는 1과 동등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행정부담의 산출이 어떠한 부담도 가져오지 않게 된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대상기업의 숫자나 규제를 통해 산출된 행정부담의 분산을 통해 획득되어 질 수 있다.

등록장부에 의한 Q의 결정의 사례

네덜란드 정부의 일정한 요청에 따라 MOT 테스트를 통과한 주차장은 발급된 취득한 MOT자격증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청은 신고를 등재부에 기재하고 전체 주차장으로부터 받은 신고 숫자를 정확하게 정리한다. 이러한 경우에 Q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록된 정보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정해질 수 있다.

[부 록]

#### 4.4 표준비용모델의 출발점

통일적인 산출방식은 측정이 이들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락에서는 행정부담의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초기(시작) 항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항목은 다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 검사를 위한 시작항목
- 보고서를 위한 시작항목

#####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유용한 시작항목

P와 Q의 구성요소의 산출에 있어 4가지 변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1)가격 (2)기간 (3)기업의 숫자 (4)빈도수. 이러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가 격
  -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에 대해 통상적으로 어떤 유형(type)의 근로자가 심사 중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문의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에서 어떤 타입의 직원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기한 유형의 직원의 임금은 임금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통계치에서 나온 임금이 총액임금인지 근로자 부담분(이러한 부분이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포함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일반비용이 추가된다.

- 외부적 가격은 상업적 시간율을 포함한다.

● 시 간

-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기업과의 면담과 (2)크로노미터기법(스톱왓치 기법).<sup>1)</sup> (정보제공의무의 충족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에 따라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이다. “크로노미터”기법의 경우 시간을 많이 요한다.

● 기업의 숫자

- 대상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수를 정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법률이나 규제 (2)정부요구에 따라 작성된 장부(등록장부) (3)통계조사. 이러한 정보를 수립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된 법률과 구제를 고려하는 데 있다. 만일 최종적인 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요구에 의한 등록은 차선의 방법이 된다.

● 빈도수(횟수)

- 빈도수를 정하게 해주는 요소는 (1)법률이나 규제 (2)정부요구에 따라 작성된 장부(등록장부) (3)통계조사. 가능한, 관련 법률이나 규제는 정보제공의무의 실행을 위한 시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최종적인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한 등록은 차선의 방법이 된다.

조사를 위한 시작항목

● 객관적 측정

측정과정에서, 가능한 고용주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현에 적합한 주관적 개념(견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측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 관

---

1) 이러한 기법은 행위가 현장이나 연구소에서 측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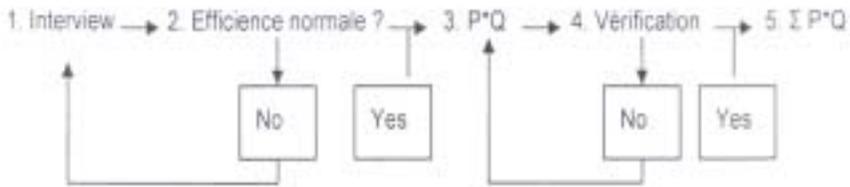
련기업과 부담의 요구주체인 행정기관-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에 도달하고 양측 당사자로부터 같이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 결과의 대표성

계량분석의 전망에 있어 개별적 면담결과는 수치화된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의 대표 전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뷰가 대상 그룹의 전형적인 회사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는 면담 대상 기업이 대상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에 비추어 비교할 만한 경우라면 사용될 수 있다. 아래 [그림 4]의 1-5 단계는 인터뷰를 통해 획득하는 결과의 대표성을 보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림4] 인터뷰 평가를 위한 다이어그램



1. 인터뷰 → 2. 평균적 효율성 → 3.  $P \times Q$  → 4. 증명 → 5.  $\sum P \times Q$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행정부담에 관한 정보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다. 필요한 면담의 숫자는 관련된 규제 가운데 포함된 분야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점은 면담을 통해 얻게 된 정보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기업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정상효율기업)인지 결정하기

표준비용모델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위해 기업 측의 대답은 대상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 [그림5]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5]

행정활동A		□□ 10분 □□	행정활동B		□□ 15분 □□
회사1	10분		회사1	10분	
회사2	10분	회사2	20분		
회사3	10분	회사3	10분		
회사4	10분	회사3	20분		
회사5	30분	회사4	15분		

행정활동C		□□ 더 많은 면담 □□	행정활동D		□□ 20분 □□
회사1	10분		회사1	10분	
회사2	20분	회사2	20분		
회사3	50분	회사3	25분		
회사4	2분	회사3	20분		
회사5	5분	회사4	15분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업무에 있어 회사5는 정상적으로 효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5는) 고려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활동 C와 관련해 우리는 가장 많은 수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제3단계에서는 행정활동을 위한 대상그룹에서의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정부담의 결정( $P \times Q$ )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것은 기업 전체에 대한 행정부담의 처음의 인식에서 나오게 된다.

증명은 제4단계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단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보, 대상그룹의 대표자에게 재이송된 가정과 산출결과의 사실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산출된 행정부담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대한 전문가

[부 록]

의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지지 방침을 형성하게 된다.

● 가정

가능한 가정은 회피되어야만 한다. 행정부담을 위해 사용된 정보는 신뢰성 있는 요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부담 산출을 위해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은 모델에서 가시적이어야 하고 이를 기술한 보고서상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 복합적 기능

일정한 수의 기업에서 데이터의 등록은 법률과 규제로부터 나오는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목표를 인식하게 된다. 복합적 목표를 가진 등록의 총비용은 검토 중인 법률이나 규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사 례

가축상(家畜商)에게 있어, 고객에 제공되는 동물의 생산품처럼, 자신의 축사에 있는 가축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행위는 가축상의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구성한다. 하지만 가축상과 관련된 다른 규제는 문제된 데이터를 동일하게 보전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문서보관이 가져오는 가축상이 가지는 부담은,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부담은 현존하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있는 법률과 규제의 빈번한 개정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나오며 보고서의 별도 항목에 그 측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현존 규제의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예기하지 않았던 추가 개선비용은 행정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사 례

관세에 대한 규제는 매년 개정된다. 기업은 현재의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관세 관련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공보를 참조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한다. 다국적기업과 운송업자들은 이러한 연수(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관세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만족하는 방법이 된다. 관세의 규제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으로서는 행정부담이라 할 수 있다.

● 매출액의 감소

행정부담의 정의에 따라 매출액(매상고)의 감소는 행정부담으로 보지 않는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제공을 이행하기 위해 인정된 것만 포함되어야 한다.

사 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기업주로서는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관 당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업주가 허가를 얻기 위한 수속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은 행정부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들어간 시간으로 인해 입은 매출액의 감소는 행정부담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기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행정부담이 반드시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행정부담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법률의) 완전(전부)준수

원칙상 행정부담은 항상 법률을 전부 준수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특정한 경우에, 예를 들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법률의) 100% 준수에 대한 측정에 기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준수 기준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표준비용모델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작성을 위한 출발사항

### ● 개방적 구조

표준비용모델은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고서가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 (1) 어떤 정보제공의무가 검토되었는가(가능하다면 법률의 조항)?
- (2) 정보제공의무에서 요청된 자료요청에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행정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3) 어떻게 비용이 산출되었는가?

다른 한 편으로 표준비용모델은 (1)규제의 변경과 (2)외생적인 발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추가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sup>2)</sup>는 적어도 각 정보의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만족하는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 행정활동비용(P)
- 비용
- ☞ 자료요청이나 보고서를 위해 되도록 법률에 정한 평균내부비용 혹은 외부비용이 사용된다. 가능하다면 기능수준별 요금에 적합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 ☞ 적용된 요금이 내부 혹은 외부비용이라면 측정상의 평가비용표는 명료하게 나타난다.
- 지속시간
- 행정활동이 실시된 연간 회수(Q)
- 기업의 숫자

---

2) 보고서는 간략한 도표형식이나 추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다 정밀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결정하고 계량하는 도구(틀)

● 빈도수

평가를 위한 이러한 비용모델 규제의 개선안과 대체수단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별도의 항목도 동일하게 포함된다. 다음 페이지에 그 예가 소개되어 있다.

● 규제의 출처

평가보고서는 정보제공의무 수준에 관해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규제출처를 기술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6장에서 후술한다.

● 규제의 중복

관련된 부서에서 다른 규제결정과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에서 대해 보고서나 비용평가모델에서 이를 언급해야 한다.

[그림6] 보고 서류의 사례

Le Modèle des Coûts Standard

Groupes de travail international sur les charges administratives

Figure 4 Exemple de feuille de rapport

No.	Titre	Origine des Réglementations	Durée (par heure)		Fréquence	P	Q	C	Origine des Réglementations			
			J	E					A	B	C	
	정보제공의무 Message 1 기업정보	기업정보 Groupement de l'entreprise	1	1	Par heure							
1	Message A1	기업정보										
2	Message A2											
3	Message A3											
4	Message B1	기업정보										
5	Message B2											
6	Message B3											
7	Message B4											

J = informe E = expertise

[부 록]

● 중복계산

단일 규제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정보제공의무의 중복계산과 등록을 피해야 한다. 관련 정보제공 책임부서는 첫 번째 서명하는 부서의 장관의 서명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

사 례

네덜란드의 경우 농지계약법(Pachtwet)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동 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서(副書)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 대해 농림수산부 장관도 부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농지계약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정부담은 법무부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행정부담은 농림수산부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

● 세부항목

1. 행정부담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함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유형별 기업군을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기업의 섹터나 규모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설 명

기업의 규모, 다시 말하면 조직이나 공정의 규모도 마찬가지로 행정부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항은 소규모 기업으로서는 매우 높은 비용의 부담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행정활동의 양이나 복잡함에 따라 매우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됨을 뜻한다. 예를 들면 대규모기업은 소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행정상 의무에 부딪히게 된다.

2.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개별적인 자료요청을 식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경험에 의하면 전략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감축가능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 측정이 자세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유로로 표시되는 정보제공의무의 규모는 부과금(*la redevance*, 원문은 *la relevance*로 되어있으나 오타로 추정된다)의 결정에 잠재하는 기준이 된다: 의무의 규모가 중대할수록(금액이 많을수록)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다.

정보원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의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뷰. 따라서 그 측정은 항상 정보제공의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된 자료를 고려해야만 한다. 인터뷰의 경우, 보고서상의 정보가 개별 기업에 대한 추적이나 추측이 가능하지 않는 한 접촉했던 조직이나 팀을 언급해야만 한다.

#### 4.5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표준비용모델의 중심 생각은 주어진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서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측정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다양한 부분의 세부 사항에 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부분으로 행정부담이 배분되어진다.

이상적 방법은 각각 법률이 4.4 부분에서 기술한 것처럼 동일한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번 매뉴얼에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항상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적은 비용을 들이고 기간을 줄이면서 비용측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측정의 정도를 차별화하는 방법
- 측정을 선택하는 방법

#### 4.5.1 측정정도를 차별화하는 방법

많은 양의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는 일부 법률은 복잡하고 기업의 서로 다른 부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작은 양의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기업의 한 부서나 일부 부서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의 복잡성은 기업에 부과된 행정부담의 규모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법률은 매우 적은 부담을 포함할 수 있고 한 부서에 대해서만 규율하지만, 역으로, 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제품의 가격결정의 경우가 그러하다.

법률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본 매뉴얼에 나타난 유사한 원칙에 항상 기초한 두 가지 상이한 기본측정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하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 “단순(간소)”한 규제를 측정할 것

어떤 규제가 덜 복잡하고 기업 부서의 정보제공의무가 비교적 적은 경우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조사의 다른 단계는, 소득과 관련된 경우, 복잡한 법률의 측정과 비교해 볼 때, 덜 엄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의무의 식별의 경우가 그러하데, 처리되는 데이터 양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 복합적 규제를 측정할 것

많은 정보제공의무나 서로 다른 부서를 포함한 복합적 규제를 측정하는 경우 직접 대면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적 규제를 담은 법률은 정보제공의무를 식별하고 보고서에 다양한 부서를 포함하기 위한 업무를 요구한다. 규제가 덜 복잡한 경우에 비해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의 측정은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 감독(감수)이 이루어질 것

서로 상이한 규제에 있어 행정부담을 감독(감수)하기 위해 식별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신속한 검토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련된 규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질문과도 상대적으로 관련된 식별상의 통계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행정부담의 측정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측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규제영역에 대한 더 합목적적인 측정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스캐닝이 매우 많은 수의 기업에 대한 통계치의 식별을 포함하거나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수행하는 트랜잭션처리를 포함한다면 통계자료 데이터의 공백<sup>3)</sup>을 나타내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분리된 개별 설문조사를 통해 합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규제 영역 상에서 기초측정의 시행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4.5.2 측정의 선택

처리비용이 보다 적게 들고 동시에 길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선택(옵션)은 검토중인 입법에 대한 특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아래 명단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주 의 : 이 명단은 네덜란드의 기초측정 자료이다. 따라서 각국의 경우와 100% 일치 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유럽국가  
의 경우 참고자료로만 기능함을 밝힌다.

---

3) 통계정보는 회사수준에 미치는 효과의 배분에 있어 필수적이다.

[부 록]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야기하는 법률 순위

입 법	네덜란드에서의 행정부담 (x유로1,000,000)	행정부담의 출처		
		A	B	C
1. 부가가치세	1,500	56%	42%	2%
2. 결산회계	1,500	99.6%	0%	0.4%
3. 제품 및 안전요구사항 (라벨표기)	1,200	98.5%	0%	1.5%
4. 봉급/임금에 대한 세금	700	0%	0%	100%
5. 공공위생에 관한 법률	700	0%	0%	100%
6. 고용자보험	600	0%	0%	100%
7. 자연보전비용	600	10%	40%	50%
8. 소득세	600	0%	0%	100%
9. 제품가격책정	500	100%	0%	0%
10. 근로조건	500	44%	28%	28%
계	8,400 <sup>4)</sup>			

A : 유럽연합이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B : 유럽연합이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지만 회원국 정부가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C : 회원국 정부가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또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네덜란드 전체 행정부담은 16,500억 유로로 추정된다.

## 제 5 장 표준비용모델의 기초측정에서 변경사항의 등록

### 5.1 서

제4장에서 현존하는 부담의 측정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작 포인트에 관해 설명하였다. 기초측정을 실시한 다음에, 측정에 있어 행정부담의 변경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부담에 추가된 변경사항은 현행 또는 개정된 규제상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하거나 경우에 따라 정보제공의무의 폐지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정부의 제안은 행정업무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TIC 해결책의 대부분의 시간은 행정부담의 감축을 통해 나타난다.

### 5.2 행정부담의 추가분과 감소분의 측정

#### 5.2.1 새로운 정보제공의무 혹은 수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행정부담의 측정

새로운 입법이나 입법의 개정은 정보제공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 후에 기업이 실행하는 행정활동은 정보요청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별되어 질 수 있다. 기존의 규제와 비교할 수 있는 신규 혹은 변경된 규제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거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P와 Q에 해당하는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전기한 계산이 통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신규규제나 개정규제와 연계된 행정비용의 계산을 위한 출발 포인트를 이하 부분에서 제공하게

[부 록]

될 것이다. 이러한 포인트는 대부분 현재비용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다른 특정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다.

### 신규의 규제나 변경된 규제의 경우 P와 Q의 계산을 위한 출발포인트

P와 Q의 구성요소의 계산에 있어 가변요소인 (1)비용 (2)시간 (3)기업의 수 (4)빈도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또는 변경규제에 있어 항구적인 출발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 • 비 용

신규 규제나 변경규제를 위한 행정부담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가능한 현실적인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대해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상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피고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식별된 피고용인의 유형에 관한 비용은 이후에 통계비용의 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시 간

기업이 신규 정보제공 의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간의 결정과정에서, 제1단계는 이른바 표준비용 카탈로그상의 기존의 비교대상 측정상 등록된 유사한 규제에 관한 일시적인 데이터가 존재하는가를 찾는 데 있다.

만일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제공의무에 연계된 행정활동의 수행에 관한 표준화된 비용을 식별하기 위한 관련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의 : 모든 추정치의 기초에 들었거나 수립된 시간에 관한 정보방법에 있어 항상 분명해야 한다.

- 기업의 수

신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규법률 자체에서 정해져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 법률의 수범대상 기업의 수는 타당한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추정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법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를 예측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기업의 수를 현황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자발적 정보제공 의무가 있고 나서 1-2년이 지난 후에 실질적인 통계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의 기업들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주 의 : 모든 추정치의 기초에 이용되었거나 작성에 사용된 기업의 수에 관한 정보의 경우 항상 분명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 빈도수

모든 경우에 있어 기업이 정보를 보고하게 되는 횟수는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비록 자발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횟수는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정보제공이 1년에 1회( $f=1$ ) 보고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신규규제 또는 개정규제와 관련된 검사를 위한 출발포인트

- 추정값

신규 규제나 개정규제에 관한 행정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추정값을 가지고 작업해야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은 가변요소들이 계량화되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예로

[부 록]

서 유사한 정보제공의무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들을 이용하거나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표준비용의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추정치는 앞에 기술한 바 있는 “검사를 위한 출발 포인트”부분의 원칙(원본 텍스트 p.25)에 의거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새로운 법률이나 변경된 법률의 측정이 문제되는 경우에 명심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측정에 사용된 추정값은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 혼합된 기능

많은 기업들은 입법이나 규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만족 그 자체 말고도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등록한다. 다양한 용도를 위한 데이터 등록에 드는 전체 비용은 검토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규제에 포함되게 된다.

- 새로운 입법과 신규 규제에 대한 인식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하나의 기업이 떠안게 되는 비용은 행정부담이다. 만일 최소한 매년마다 법률개정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부담은 현실가격으로 비용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비용측정에 포함하는 이유는 기업들로 하여금 입법의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만일 법률 개정이 매우 빈번하지 않다면 그 비용은 예외적 비용이 되고, 새로운 규제의 규제영향 평가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계산되어야만 한다.

- 총비용의 준수

행정부담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수행의 총(100%)비용의 기초로 추정된다.

사 례

경제부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2,000개의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만일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어 2000개 기업 중 일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관련 법률규정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얼마의 기업들이 관련 법률을 전부 지키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부담은 2,000개의 기업 전체를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 예외적 비용

예외적비용은 규제영향분석(RIA)에 포함되도록 계산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예외적 비용은 경상비용과 같이 기초측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입법이나 규제입법의 개정의 측정에 있어 예외적 비용을 포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만일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비용은 저평가기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

사 례

신규 규제로 인해 기업인 X는 새로운 정보제공 의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인 X는 운영패키지프로그램과 같은 예외적 구매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매가 가져오는 비용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전략적 질의사항에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총비용은 단일기간 동안에만 계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평가기간에 따라 분산되어야 한다.

## 5.2.2 기술적 변경조치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의 측정

5.2.1에서는 신규 규제나 개정된 규제와 관련해 어떻게 행정부담을 측정하는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행정활동의 수행에 투자하는 기업의 시간을 줄이는데 있다. ITC솔루션 덕분

[부 록]

에 대부분 이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시도의 효과 측정은 정보제공의무의 수행과정에서 도입되는 시도를 통해 절약되는 기업들의 시간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측정을 요구하게 된다.

### 5.3 기초측정의 유지

정부는 보다 역동적인 환경 하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규 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규제는 재차 규정되어 지고, 간이화되고 개정된다. 이러한 행정부담의 변동은 측정된다(5.2. 부분을 참조). 하지만 현실의 거래시장에서 도입되는 전체 구조적 변경을 위해 측정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본측정의 유지 옵션이 있다.

#### 1. 전략적 결정에 따른 행정부담의 변동의 계속적 모니터링이 수반된 2-3년 후의 전부개정.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든 거시경제학적 지표(인플레이션과 임금수준 등), 모든 독립변수(기업 및 고용자의 수)와 특별한 성질의 영역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다음 기초측정 시점까지 동결된다. 달리 말하자면 행정부담의 볼륨은 전략이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하게 된다.

#### 2. 모든 지표의 매년 변동.

이는 어떻게 비용과 기업의 수를 통해 경기변동에 접근하는가를 알 수 있고 기술적 및 조직구성의 진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아는 문제를 가져온다.

## **제 3 부**

### **행정부담의 기초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 제 6 장 행정부담의 기초

### 6.1 서

본 장은 행정부담을 지탱하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제공의무 의사결정 수형도(樹型圖)에 대해 다루고 있다.

- A유형 : 정보제공의무와 그 수행이 유럽연합차원에서 관리된다. 이는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 부처는 제한적인 행정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 B유형 : 정보제공의무가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로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구체적 작업은 정부의 몫이 된다. 따라서 행정부담의 성질이나 단계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처가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를 시행하고 구성하는 양식에 따라 결정된다.
- C유형 : 회원국의 국내법이나 규제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전부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정보제공의무 방법을 규정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어떤 입법이 어떤 영향영역 하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내 전략에서 정보제공의무가 부가된 경우에 다른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의 협력기관의 자문 없이도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유럽연합과 혹은 국제협력기관의 자문이 있어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행정부담은, 예를 들면 TIC의 적용을 통한 정보 신청의 간이화나 신속화

[부 록]

를 통해서 분명히 감소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유형화를 통한 분류방식은 정보의 내용과 부속된 행정부담에 따라 정보제공의 원인을 구별하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분류)화 (Categorization)는 행정부담 감축의 (비)선호도나 (불)가능성에 대한 신고의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6.2 구별을 위한 결정 수형도(樹型圖, l'arbre de décision)

전술한 카테고리의 분류가 합리적이고 통일적 출발 포인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7]과 같은 비용결정 수형도를 고안하게 되었다. 의사결정을 위한 수형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제공의무가 어떤 카테고리에 놓이게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카테고리A와 C의 경우 아래 [그림7]의 질문1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정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될 수 있다. 다음 질문은 회원국 국내전략상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부과된 정보제공의무가 확대되거나 확장되었는가 하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의 질문3과 4에서 보는 상황이 뒤따를 수 있다.

- 국내법은 국제적인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국내법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의 빈도수는 국제규정에 따른 경우보다 더 많아야 한다.
- 국내법의 목표대상은 이들이 국제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목표 집단을 포함하고 확대된다.
- 국내 법률이나 규제에서 요구되는 측정의 정확성은 국제법이나 국제적 규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부 록]

인 의무제공 관련 대상기업이 확대되었는가?

**질문5a.** 정보공개 의무가 국내부분에 분류되는 경우 ⇨카테고리 C

예 <

**질문5b.** 구체화 수단이 정보제공 의무의 국제부분에 규정되어

있는가? < 예: 카테고리 A

(아니오)

아니오: 카테고리B

↓

**질문6.**

정보공개 의무가 유럽공동체 디렉티브(Directive)나 국제법으로부터 파생되지  
만 동 의무의 구체화는 국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양자 모두 / 혹은

>카테고리B

**질문7.**

회원국 국내정부가 정보공개 의무의 유럽법이나 국제법의 구체화/강제집행  
을 위해 정보제공 의무를 부가한다.

## [별첨 1] 행정부담 정의에 관한 질문지

제1부에서 행정부담에 관한 용어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어떤 비용이 행정부담에 속하는가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분명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요약해보기로 한다.

### 1. 일반질문

#### **감사(감독, le coût de supervision)비용은 행정부담을 통해 커버되는가?**

기업이 개별 권한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행정부담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서류를 통한 감사비용의 경우 재무기관이 감사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되는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비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항의) 비용(les coûts d'opposition et d'appels)과 기타 유사절차에 관한 비용도 행정부담을 구성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반대(항의)는 허가거부에 대한 소청이나 세무공무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처럼 행정비용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관의 판정이나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항소비용은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행정부담에 포함된다.

종종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기업들은 중재(arbitrage)나 민사소송상의 협상(une negotiation)에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감사조치나 사법조치와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많은 절차에서 정부조치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기업들은 법률에서 정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부담이 된다.

주 의 : 상기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비용은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된다. 하지만 상기한 상황들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나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부담은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담은 대상 선정에 있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변호사 비용(droit de defense)은 행정부담에 포함되는가?**

규제의 위반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행정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부담은 모든 규제의 준수라는 기초를 전제로 측정된다.

2.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에 관한 질문

**조사의무(l'obligation d'investigation)도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일정한 경우에 법률이나 규제에서 정부나 다른 권한당국은 기업에게 정보의 얻기 위해 일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조사는 종종 허가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제공의무는 행정상의무이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비용은 행정부담이 된다.

**검사/조사(l'inspection)에 의해 야기되는 정보제공은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차량이나 설비의 검사/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행정부담은 행정부담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직업이나 연수와 관련된 시험과 같은 특정개인에 관한 조사는 행정부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 입법과 정부규제 개념에 관련한 질문

**협약(l'engagement)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제공의무도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협약은 구속적인 규제라 할 수 없지만 정부와 기업 혹은 기업의 부서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의 이행에서 나오는 비용은 비록 이러한 협약이 규제의 일반적 내용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부담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조금(la subvention)에 기인한 정보제공의무도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은 입법이나 규제의 산물이다. 따라서 보조금에 연계된 정보제공의무는 행정부담으로 추정된다. 어떤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조금에 연계된 행정활동은 기존의 부담측정과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의 등록이나 처리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다.

**자격증명 인증요구(une demande de brevet)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도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자격증명서/인증서의 요구로부터 나오는 정보제공의무는 행정부담 측정에 포함된다. 보조금신청이나 허가신청(의도적인 경우)의 정보제공의무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증명서(une certificat)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도 행정부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증명서는 독립적인 당사자 일부가 어떤 상품, 서비스, 절차나 사람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였는가를 결정하는 절차(un procesus)이다. 증명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의 충족을 증명하는 확인이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이 요구하는 증명서의 경우에만 행정부담이 된다. 다른 증명서 형식-자율적 규제로부터 작성된 경우-은 행정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첨 2] 정보제공의무와 행정활동의 유형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는 대략 17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은 보통은 유사한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 시 관계당국에 정보를 제출하는 일과 관련 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의 운용에 있어 정보제공의무는 될 수 있으면 상이한 입법과 규제형식과 대상그룹의 부담을 비교할 수 있게 통일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아래에서 기술하는 활동목록은 표준비용모델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만족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활동은 목록을 참고한 다음에 수정될 수 있고 불필요한 활동의 경우 폐기(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특정한 활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된 17가지 활동은 아래와 같다.

### 1. 보고/ 통지

위 유형은 활동 이전 혹은 이후에 보고서 트랜잭션<sup>1)</sup>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의 수집
- ② 보고서의 작성
- ③ 관할당국에 보고서 제출
- ④ 보고서의 보관

### 2. 허가신청

모든 종류의 허가 신청은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허가신청에 관련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1) 정보단말기 이용자가 중앙처리시스템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작업단위.

[부 록]

- ①신청목적의 고지
- ②정보의 수집
- ③허가신청서 작성
- ④허가신청서제출
- ⑤허가취득과 보관

3. 승인(承認)신청

승인신청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증거에 관련된 신청과 관련될 수 있다. 승인신청에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관련대상자에 대한 면허장, 면허증 및 추천서의 수집
- ②품질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절차의 작성
- ③승인요청서 작성
- ④승인신청서 제출
- ⑤승인서의 취득 및 보관

주의: ①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교육은 행정부담을 구성하지 않는다.

4. 기록/ 측정의 실행

보통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록 작업의 수행과 관련된다. 기록에 관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①측정 시스템의 컨셉과 커뮤니케이션
- ②측정 및 / 혹은 분석, 기록에 유용한 장비의 설치
- ③정보의 기록
- ④정보의 보관(일반적으로 1-5년간)

- ⑤요청이나 주기적인 결과를 관할 당국에 보고
- ⑥측정결과에 대한 자문을 할 것

#### 5. 주기적인 조사의 실시

주기적 조사의 경우 단일측정 혹은 소량측정을 전제로 하는 직접 (혹은 간접)조사의 실행과 관련 있다. 이러한 조사는 보통 다른 의무의 수행에 선행하여 정보의 수집을 하는데 포함된다.

- ①조사의 준비
- ②측정의 이행
- ③결과의 처리
- ④조사보고서 작성

#### 6.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수행된 활동(연말보고서, 환경에 관한 연례보고서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있다. 관련활동은 아래와 같다.

- ①정보의 수집
- ②정보처리
- ③보고서작성
- ④보고서제출 및 보관
- ⑤보고서에 관한 토론

#### 7. 검사(감독)의 실시

검사(감독)는 (1)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허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점검의 이행과 (2)개인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검토와 관련된다. 검사(감독)는 대개 승인된 단체에 의해 이행된다. 검사(감독)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부 록]

①검사(감독)에 대한 준비: 검사(감독)하는 기계나 장비를 당해 서류와 같이 제공하거나 개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②관련담당자 또는 장비의 점검

③검사(감독)결과의 처리

④검사(감독)후 보고서 작성

⑤승인서의 취득 및 보관

8. 허가나 면제의 신청

어떤 특정한 활동에 관한 허가 또는 면제신청 및 취득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허가 및 면제신청에 관한 활동은 아래와 같다.

①신청서 작성

②신청서 제출

③응답서의 수신 및 보관

9. 사업계획(긴급지원계획)과 관련 프로그램을 현황에 맞게 유지

매뉴얼이나 긴급지원계획 등과 같이 관할 당국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①사업계획(긴급지원계획)과 프로그램의 작성

②현 자료에 대한 평가

③관련 팀이나 다른 팀과의 자문

④서류의 재작성

⑤신규 자료의 분류와 보관 및 관련 조직과의 연계화

10. 감사(監査)/감독/방문기관과의 협조

이러한 것은 정보제공과 외부에서 감독과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감독 및 기업의 외부감사기관 법규의 적용에 관한 기업방문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감사/감독/방문 준비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 ②외부인사의 감독(보통 2인 외부공무원 팀원 중 1인)
- ③결과의 토의
- ④추가적 정보의 제공
- ⑤보고서 작성
- ⑥보고서제출 및 보관

#### 11. 제3자를 위한 라벨부착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라벨의 부착 또는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다. 라벨부착/분류에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라벨링을 위한 정보수집
- ②라벨의 컨셉
- ③라벨의 부착

주의: 라벨링이 품질 라벨의 영구적 부착을 의미한다면 ③만이 유효하다.

#### 12.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예를 들면 투자상품을 동반한 금융관련 카드를 제3자에 정보(앞의 라벨부착과는 구별됨)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정보수집
- ②문서작성
- ③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보관과 제공

[부 록]

### 13. 무역에 관련되는 문서의 작성

인력과 상품의 분별을 위한 대부분의 시간(상사등기소의 등본이나 운송장)이 소요되는 경제적 거래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및 제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된다.

- ① 관련문서의 요청
- ② 문서작성 / 제시

### 14. 입법 및 규제에 대한 유의

네덜란드의 법률과 규제에 대한 파악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 규제가 긍정적으로 변경되고 적정한 형식(혹은 세부사항)이 변경되었다면 행정부담은 그러한 의미에 포함될 것이다. 법률이나 규제내용의 파악에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법률이나 신규규제의 입수
- ② 새로운 법률이나 신규규제의 검토
- ③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법률과 신규규제의 변경이 주는 효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15. 반대 및 이의제기비용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항소에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반대의견서의 작성
- ② 반대의견서의 제출
- ③ 이의신청서 준비
- ④ 이의신청 구비요건의 충족

## 16. 불만사항의 처리

불만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현재 제출된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불만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만처리과정의 준비
- ② 불만처리과정의 공개화
- ③ 3인의 인원으로 구성된 불만사항 처리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것

## 17. 등록장부에 기재

명부나 장부에 기재를 등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장부기재와 관련되어 행해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의 수집
- ② 등재
- ② 등록장부 사본의 취득과 보관

### [별첨 3] 정보제공의무의 결정 수형도와 관련한 질문지

제3부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원인을 규정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에서는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과 간단한 질문 및 이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B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의무는 항상 유럽공동체지침(directive)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A유형의 정보제공의무는 항상 유럽공동체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유형별로 할당은 유럽법규의 직접적(또는 다른) 조치마다 고유하다. A유형에 해당하는 행정부담은 유럽법에 의해 직접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정보제공의무와 방식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 방식에 따라 정보제공의무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규제와 공동체 지침에서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B유형의 정보제공의무에 적용된다. 규제와 관련되는 한 회원국은 자신들의 규제의 실행을 관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법률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라벨을 통해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국제적 라벨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종종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국제법규에서 규정된 라벨은 A유형 또는 B유형으로 분류된다. 국내라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내정부가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C유형으로 분류된다.

**일정한 정보제공의무는 공동체조약과 구별되어 회원국 사이에서 조정되고 통상의 유럽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유형의 분류는 국제법 전체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법과 비교해서 다른 국제협정도 또한 검토된다. 이러한 협정들로는 몬트리올 의정서, 아라스 협정, IATA 협정, IMO 협정 등의 예가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행은 이에 대한 실행을 의무 지우는 상기 조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들은 A유형이나 B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보제공의무는 일부분 A유형 또는 B유형에 관계되고 또 부분적으로 C유형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사이에 정확한 분포나 분류의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보제공의무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실행하는 공무원과 법률가들이 서로 다른 유형들 사이에서 정확한 비율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측정수단을 인가(approbation)하는 유럽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없을 수 있고 이들 두 가지 수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한 경우, 그 배분은 관련 집행부의 자문을 통해 결정되어 진다. 예를 들면, 국제적 요구사항에 따르는 수단의 숫자는 승인되고 국내 요구사항에 따르는 수단의 숫자는 행정부담의 승인의 배분방법으로 인정된다.

5번 정보제공의무와 연관된 1번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부처의 법률에서 나온다. 이러한 다른 부처의 5번 정보제공의무는 국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 의무는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되어야 하는가?

이 경우, 카테고리의 유형화는 C유형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부처의 법률은 그 분야에서 결정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문제의 행정비용은 중복적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행정부담은 기업이 1회만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과 규제의 일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국제법규가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 방식이 향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률의 전문(前文)이나 법률 조항은 어떤 유럽법 또는 국제법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의 기준이 되는가를 알려준다. 관련된 조항에 대해 명확히 할 때, 문제는 세부적으로 발전된다. 그밖에도 전환규정 별표(대개 법률과 판결을 동반한 설명이 있는 메모의 내용)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별표는 정보제공의무에 일치하는 제로측정이 조항번호를 제공하는 한 그 분야에서 유용하다.

어떤 정보제공의무는 유럽연합 법에 정한 기초에 의거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A유형이나 B유형으로 분류되는가?

그렇지 않다. 유형별 분류는 법률이나 현재의 규제의 유형별 분류의 일람을 제공하기 위해 인식된 것이다. 이는 예상된 국제적 의무의 선행('anticipation')<sup>1)</sup>이 국내법적 목표(전략)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C유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유형화 분류작업이 매년 기초자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럽연합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되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C유형에서 벗어나 B나 A유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명령 수행시에 다음 정보의 탐색을 시작함으로써 컴퓨터의 정보처리 단위능력을 향상시키는 선행을 의미하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앞서 행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별첨 4]1) 내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기준율에 관한 목록**

네덜란드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직업당 시급은 대충 전체 수입에 비례한다. 2007년 42% 정도 고용주의 기여로 발생하는 추가임금은 내부직원이 갖는 시급을 증가시킨다. 2004년에서 2007년 임금 비용 분류에 따라, 임금과 관련한 지출 조사에서 고용주의 기여를 분류하는 것에서 이 수치를 얻었다. 그러므로 시급과 관련한 비용을 통해 얻은 이 수치는 간접비에 대비해 25% 증가했다.

[2005년 직업에 따른 전체적인 시간당 임금과 내부적 시간비율(€)]

직업군	2005년 전체시급	2006년 전체시급	2007년 내부근로 시간율
고위 관리층	38	40	71
관리자	26	27	49
숙련된 지식 근로자			
-의사 전문가치과의사	24	25	45
-세무사	38	40	71
-회계사	37	39	69
-변호사, 법률 자문가, 국	31	33	58
내법 공증인	30	32	56
-병원 수 간호사	27	28	50
간접 교육 직원	20	21	37
행정직원	15	16	28
목수, 미숙련 직원	13	14	24
기 타	15	16	28

1) 2004년 SCM모델을 개량한 SCM II(2007)의 부록5.